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 일러두기

본 책자는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외국인환자 상담 사례를 통한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상담 실무 업무 수행을 돕고자 제작된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b>I. 의료법 등 외국인환자 관련 법령 일반</b> .....	<b>1</b>
1. 외국인환자의 정의 .....	3
2.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	5
3.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의 의료광고 범위) .....	6
4.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 플랫폼에 시술례·수술례 사진 게재) .....	8
5. 의료광고 관련 (의료서비스 할인 쿠폰 게재·발행 가능 여부) .....	9
6. 의료광고 관련 (외국인환자의 수술 후기 게재) .....	10
7. 의료광고 관련 (의료광고의 주체) .....	11
8. 국민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	12
9. 외국인환자 사망 시 대응 절차 .....	13
10. 외국인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	15
<b>II. 사증·출입국 관련</b> .....	<b>17</b>
1. 의료관광비자란? .....	19
2. 의료관광비자(메디컬비자) 발급 절차 .....	21
3. 의료관광비자 대리 발급 관련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대리 발급) .....	26
4.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 .....	27
5. 외국인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	28
6. 교통사고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	29
7. 체류기간 연장신청 .....	31
8.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32
9.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	36
10. 사증 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	37
11.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	47
12. 체류기간 초과자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연장 .....	48
13. 보호자의 비자연장 대리 신청 .....	49
14.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 신청 .....	52
15. 불법체류자 발생 시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	53
16. 외국인환자 초청장 발급 .....	55
17. 두 개 이상 의료기관 중복 방문 가능 여부 (메디컬비자 발급 시) .....	56
18. 비자 발급 대행기관의 자격 요건 .....	57
19. 메디컬비자 신청 가능 횟수 .....	58

## 차 례

20. 불법체류자의 비자 재신청 .....	59
<b>III. 국민건강보험 .....</b>	<b>61</b>
1.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63
2.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재취득 .....	66
3.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	67
4.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	69
5.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	71
6. 외국인 신생아 및 그 밖에 경우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74
<b>IV.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b>	<b>75</b>
1. 의료기관 소개 및 병원 추천 문의 .....	77
2.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	78
3.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79
4. 외국인환자 진료비 문제 .....	80
5. 미용·성형 진료비 관련 .....	82
6.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	83
7.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리진료 .....	84
8. 진료기록 대리 열람·발급 문제 .....	85
9.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범위 .....	86
10. 외국인환자 진료서식 문의 .....	87
11. 외국인환자가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방문한 경우 .....	88
12. 초진 후 재진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	89
13. 외국인 무료진료소 .....	90
14.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	97
15. 외국인환자가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 게재하는 경우 .....	98
16.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지 .....	99
17. 통역 서비스 지원 .....	100
<b>V.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b>	<b>101</b>
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관련 .....	103
2. 관할 시도 문의처 보기 .....	105

## 차 례

3.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유치업체의 경우) .....	106
4. 동일 의료기관(분점)의 신규 유치기관 등록 .....	108
5.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의료기관의 경우) .....	109
6.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갱신신청 만료 기간 .....	111
7.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시 보험 가입 문의 .....	112
8.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개인이 외국인환자 소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13
9.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외국인환자를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경우) .....	114
10.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유치등록 의료기관간 외국인환자 알선수수료 지급 불법여부) .....	115
11. 유치업체 추천 문의 .....	116
12.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문의 .....	117
13. 의료해외진출법 역외적용 .....	118
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관련 .....	119
15.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선의로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경우) .....	121
16.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미등록 여행사가 관광객의 요구로 수수료 없이 국내 의료기관 소개하는 경우) .....	122
1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KAHF) .....	123
18. 적정 유치 수수료율 .....	125
19.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혜택 .....	126
20. 성형·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	127
21.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치등록 필요 여부 .....	128
22. 해외홍보시 진료과목 표기 .....	130
23.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및 시스템 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 .....	131
<b>VI.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 .....</b>	<b>133</b>
1. 조정 및 중재의 차이점 및 해결방법 .....	135
2. 의료분쟁조정 관련 .....	137
3.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	142
4.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	143
5.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 완화 원칙 여부) .....	145
6. 수술동의서상의 면책 조항 효력 여부 .....	147
7. 법률적인 해결 없이 장기화되는 의료분쟁 .....	149
8. 환자와 에이전시 간 보증금 관련 갈등 .....	150

## 차 례

9.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수수료 관련 갈등	151
10. 에이전시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지불 관련 갈등	152
11.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관련 갈등	154
12. 외국인환자도 공정한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155
13. 중복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157
14.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8
15.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159
16.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담당의사가 타 병원 근무하는 경우)	160
17.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의료기관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161
18. 수술예약금 환불 관련	162
19. 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한 경우)	168
20.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활용 및 비용 청구	169
21. 의료분쟁 발생 시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도 효력이 있는지	170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신청	171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수수료	173
24. 불법체류자의 의료사고 발생	175
25.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조정신청	176
26. 외국인환자 진료 거부	177
27.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방법	179
28. 한국소비자원 MOU 체결 해외기관 목록	181
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차이점	182
30. 의료분쟁 사례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	183
31. 의료분쟁 사례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184
32. 의료분쟁 사례 (처방약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185
33. 의료분쟁 사례 (진료계약 파기시 검사비 환불 여부)	186
34.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187
35.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결과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188
36. 의료분쟁 사례 (유방확대수술 후 감염 및 조직 과사)	189
37. 의료분쟁 사례 (피부관리 선불 수수료 환급)	190
38. 의료분쟁 사례 (안면거상술 이후 신경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191

## 차 례

<b>VII. 불법 브로커 신고 관련</b> .....	<b>193</b>
1. 불법 브로커 개념 안내 .....	195
2. 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 .....	196
3. 불법유치행위 등 신고포상금제 .....	198
4. 미등록 유치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	201
5. 불법 유치행위 신고시 익명성 보장 불가 .....	202
6. 불법 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	203
<b>VIII.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b> .....	<b>205</b>
1.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안내 .....	207
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진료 항목 안내 .....	208
3.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안내 .....	209
4.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외국통화 .....	210
5.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	211
6.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경우 .....	213
7. 성형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215
8. 출국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216
9. 지불수단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	217
10. 부가가치세 가맹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환급 의무 .....	218
1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219
12.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공항) .....	220
13.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도심) .....	223
14. 유치업체가 진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225
15.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율 .....	226
16. 부가가치세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 .....	227
<b>IX. 메디컬코리아센터 소개</b> .....	<b>229</b>
1.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제공 서비스 .....	231
2.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232
3.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제공 서비스 .....	233
4.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234
5. 메디컬코리아 챗봇 서비스 운영 .....	235

## 차 례

<b>[부록] 관련 법령 및 고시</b> .....	<b>237</b>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239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2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0
4.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68
5.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를 고시 .....	272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273

# I.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의료법 등 외국인환자 관련 법령 일반

1. 외국인환자의 정의 | 3
2.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 5
3.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의 의료광고 범위) | 6
4.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 플랫폼에 시술례·수술례 사진 게재) | 8
5. 의료광고 관련 (의료서비스 할인 쿠폰 게재·발행 가능 여부) | 9
6. 의료광고 관련 (외국인환자의 수술 후기 게재) | 10
7. 의료광고 관련 (의료광고의 주체) | 11
8. 국민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 12
9. 외국인환자 사망 시 대응 절차 | 13
10. 외국인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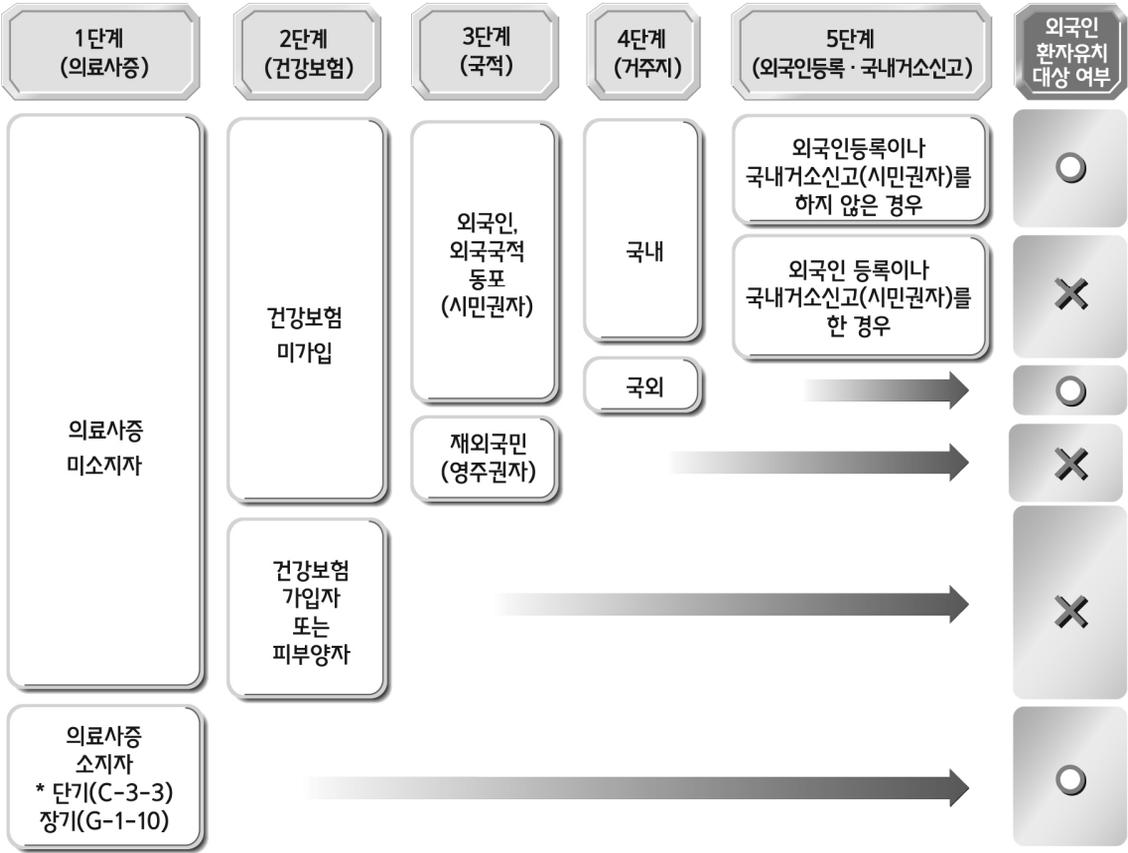


# 1 ● 외국인환자의 정의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응급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미국 국적의 4살 어린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미군입니다. 위와 같은 환자도 외국인환자인지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의 범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범위는 1단계 ~ 5단계의 각 사항을 차례로 검토하시면 유치 대상 여부 확인이 편리할 것입니다.



- 주한 미군이나 그 가족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미군 가족 환자의 경우(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유치대상인 외국인환자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외국인환자의 정의 및 기준

- ◆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말함
  -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 제31조(외국인등록)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인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제2호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2 ●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지방의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간 외국인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등록을 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환자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변

- 외국인환자 비율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병상 수’이고, 그 제한의 대상은 ‘종합병원’에 한정됩니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단 1인실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 3 ●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의 의료광고 범위)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 교민사이트에 광고를 한다면 위법행위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미국 교민사이트에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현지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별 현지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의료광고와 유치업체의 광고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만일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로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 제56조 참조)
  -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으로 한정되며,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의 개념을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광고는 일정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족하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공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도(설사 그것이 공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한된 장소(외국인전용 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지정된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환자들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4 ● 의료광고 관련 (유치업체 플랫폼에 시술례·수술례 사진 게재)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플랫폼 상에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례, 수술례 등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답 변

-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규정은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의료기관의 시술례, 수술례 등의 사진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술례, 수술례 등의 표현 방법에 따라 환자의 치료후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환경에서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수술 전 사진은 어두운 배경, 수술 후 사진은 밝은 배경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5 ● 의료광고 관련 (의료서비스 할인 쿠폰 게재·발행 가능 여부)

(문의 사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안내센터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협력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할인쿠폰을 게재·배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급여 치료비 할인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일정한 범위 내 (할인기간, 할인대상, 할인범위 등을 한정해야 하며,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을 해서는 안됨)에서만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특히, 일단 할인쿠폰이 발행될 경우에는 할인쿠폰이 전전 유통될 수 있으므로, 자칫 할인쿠폰 발행행위가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유인행위금지규정(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할인쿠폰을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6 ● 의료광고 관련 (외국인환자의 수술 후기 게재)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은 외국인환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후기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환자 자발적인 게재일 경우)

### 답 변

-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금지되는바, 귀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귀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요청(치료비 할인조건 등을 포함)에 따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료경험담을 공개한다면 이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실시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 아니기에 '의료광고'라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의료광고에 관한 제한규정(의료법 제56조 등)이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7 ● 의료광고 관련 (의료광고의 주체)

(문의 사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나요?

### 답 변

-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출처: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 따라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제3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 56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이벤트의 내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8 ● 국민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문의 사례) 저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일이 생겨 부득이 대한민국 국적자 이자 건강보험 가입자인 친척의 건강보험증을 한 번만 빌려서 쓰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확인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제재를 받는 일은 있어도 실제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환자 본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땀땀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실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인 제 친척이 받을 수 있었을 진료를 제가 대신 받는 것에 불과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 답 변

-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요양급여(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를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양도·대여 금지, 부정사용 금지
-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는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 또한, 귀하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친척 역시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 ◆ 동법 제115조(벌칙)

## 9 ● 외국인환자 사망 시 대응 절차

(문의 사례)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환자가 저희 병원에 도착 후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도착 4분 후 사망).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구급차 후송 중에도 생존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의료사고나 분쟁이 염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같이 외국인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외국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대체로 아래의 몇 단계에 따라 행정적 수속 및 시신처리를 하게 됩니다.
  -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유족위임장을 받음
  - ② 사망진단서 발급
  - ③ 외교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을 받은 후 본국대사관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음 (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 ④ 시신 처리
    - ※ 사망자 유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보낼 서류: 본국대사관에서 받은 사망확인서 1부를 해당국 유족에게 우편으로 보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신 처리 등의 본국 송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우리나라 세관에 문의하시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본적인 절차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통관절차 적용
    - 유해 및 유골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운송됩니다.
    - 따라서 유해·유골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검사대상)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5. 12. 발령·시행) 제36조제1항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 자료 제출은 관할세관 담당부서(통관지원과 또는 수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 여권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 여권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형별 송환 절차

##### •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 ※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합니다.
- ※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 화물 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 ※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 •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 ※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 출처: 관세청([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간이 통관절차)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main.do>) (알림마당/FAQ)

#### ■ 관련법령

#####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목록통관)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제37조의2(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

## 10 • 외국인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문의 사례) 현재 저희 병원에서 장기치료비자로 입국하여 오랜기간 치료를 받고 계신외국인 환자분께서 한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는걸 들으시곤 본인도 작성을 희망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인환자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

### 답 변

-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 할 경우 작성이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안내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데이터베이스 조회 ▶ 등록·보관
- 등록 가능한 기관조회 및 의향서 서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www.lst.go.kr](http://www.lst.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나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http://www.lst.go.kr))

### ■ 관련법령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II.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사증·출입국 관련

1. 의료관광비자란? | 19
2. 의료관광비자(메디컬비자) 발급 절차 | 21
3. 의료관광비자 대리 발급 관련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대리 발급) | 26
4.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 | 27
5. 외국인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 28
6. 교통사고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 29
7. 체류기간 연장신청 | 31
8.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 32
9. K-ETA (전자여행허가제도) | 36
10. 사증 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 37
11.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 47
12. 체류기간 도과자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연장 | 48
13. 보호자의 비자연장 대리 신청 | 49
14.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 신청 | 52
15. 불법체류자 발생 시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 53
16. 외국인환자 초청장 발급 | 55
17. 두 개 이상 의료기관 중복 방문 가능 여부 (메디컬비자 발급 시) | 56
18. 비자 발급 대행기관의 자격 요건 | 57
19. 메디컬비자 신청 가능 횟수 | 58
20. 불법체류자의 비자 재신청 | 59



# 1 ● 의료관광비자란?

(문의 사례) 우리나라에 치료를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 변

-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비자는 단기로는 의료관광비자(C-3-3), 장기로는 치료요양비자(G-1-10)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관광비자(C-3-3)와 치료요양비자(G-1-10)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료관광비자	치료요양비자
허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li> <li>⑤ 외국인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li> </ul> <p>*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li> <li>⑤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li> </ul> <p>*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p>
체류가능기간	단기비자(90일 이하)	장기비자(1년 이내)
유효기간	단수, 더블, 복수 신청 가능 (요건 상이하며, 단수사증 3개월, 더블사증 6개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임)	

- 의료관광비자(C-3-3) 초청자격은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2. 1. 1. 시행)
- 90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메디컬비자 외에도 관광비자, 단기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비자(90일 이내)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필요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 21개국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함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

※ 베트남의 경우, '16.4.1부터 사증발급 인증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정보광장-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통합 안내매뉴얼(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3.09.20))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 ◆ 동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

## 2 의료관광비자(메디컬비자) 발급 절차

(문의 사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의료관광(C-3-3, G-1-10)비자 발급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첫째,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청이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가 비자 신청시 그리고 비자를 찾을 때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림. 신청절차〉



- ② 둘째, ‘사증(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자 포털을 통해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완료하고 그 승인내용을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러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부착해 주기 때문에 대사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림. 신청절차〉



③ **마지막으로**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이 있습니다.

- 전자비자는 대한민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재외공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비자에 대하여 비자 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인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비자는 ‘사증(비자)발급인정서’와 달리 완전한 비자여서 재외공관에 갈 필요 없이 환자가 컴퓨터에서 전자비자를 출력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림. 신청절차〉

· 외국인 본인 신청절차



· 초청인 대리 신청절차



- 의료관광 관련 전자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유치기관이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허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유효한 여권과 ‘전자비자발급 확인서’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매년 우수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 이상 1년 간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출처 :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비지안내/신청절차)

〈참고자료 1〉 의료관광비자 (C-3-3 비자) 발급방법별 세부내용

구분	재외공관신청	비자발급인정서	전자비자
대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신청 요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유효 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 ※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 최대 90일 까지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또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 ※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 최대 90일 까지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더블비자(유효기간 6개월)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 ※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 최대 90일 까지
필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li> <li>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li> <li>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li> <li>④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li> <li>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li> </ol> <p>※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li> <li>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li> <li>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 생략</li> <li>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li> <li>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li> </ol> <p>※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p> <p>【 *동반가족 입증 서류 】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같음 가능 ※ 대리인 신청사: 위임장, 대리인 재직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파일), 표준규격사진(파일), 수수료</li> <li>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li> <li>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li> <li>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생략</li> <li>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li> </ol>

〈참고자료 2〉 의료관광비자 (G-1-10 비자) 발급방법별 세부내용

구분	재외공관신청	비자발급인정서	전자비자
대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치료기간이 91일 이상), 그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신청 요건	<p>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로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p> <p>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p> <p>*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p> <p>※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 입국 허용</p>	<p>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로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p> <p>*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로 등록된 자</p> <p>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p> <p>*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p> <p>※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 입국 허용</p>	<p>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로 치료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p> <p>*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로 등록된 자</p> <p>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p> <p>*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p> <p>※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 간 환자송출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 입국 허용</p>
유효 기간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 ※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 까지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 ※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 까지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 ※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 까지
필요 서류	<p>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p> <p>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p> <p>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p> <p>④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p> <p>※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p> <p>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p> <p>※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재국(관할구역)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p>	<p>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p> <p>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p> <p>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 생략</p> <p>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p> <p>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p> <p>※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p> <p>※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 가능</p>	<p>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p> <p>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p> <p>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p> <p>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p> <p>*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생략</p> <p>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p> <p>※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p> <p>※ 사무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 가능</p>

### 3 의료관광비자 대리 발급 관련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대리 발급)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유치업체입니다.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을 통해 외국인환자 및 가족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신청서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초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가족의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환자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필요 없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정보광장-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통합 안내매뉴얼(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3.09.20))

## 4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

(문의 사례) 중국 국적 소지자입니다. 곧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단기비자로 방문해도 숙박 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실인가요?

### 답 변

-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경보의 발령 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하고자 '20.12.10 도입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외국인	대상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의 단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
	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자	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의무	숙박업자가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등의 정보를 법무부가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출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www.k-eta.go.kr/trds](http://www.k-eta.go.kr/trds))

#### ■ 관련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의무)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자료)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방법 등)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 「공중위생관리법」
- ◆ 「관광진흥법」

## 5 외국인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문의 사례)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등록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메디컬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외국인 등록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의료관광 단기체류자격(C-3-3)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장기체류자격(G-1-10)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환자(C-3-3, G-1-10)는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C-3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G-1은 직장가입자만 혜택).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6 ● 교통사고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신청

(문의 사례) 서울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외국인 환자를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 환자는 1개월 체류기간의 여행비자(C-3 단기 종합)로 입국하여 관광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입원으로 인해 사증 상의 체류기간인 1개월을 넘겨 체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현 상황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몇 개월 이상으로 장기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환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 국내에서 체류가 불가피하여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환자 분께서는 사증(비자)상의 체류기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자격(G-1-10) 변경 대상입니다.
- 환자가 사고로 인해 진료 목적의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면 G-1-10(치료요양비자) 비자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G-1-10 비자는
  -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에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환자와 같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국내체류 필요성에 따라 G1(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 생략
-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인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정보광장-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통합 안내매뉴얼(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3.09.20))

## 7 ● 체류기간 연장신청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입니다. 저희 고객인 외국인들은 단기 메디컬비자인 C-3-3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고객들 중 최근에 체류기간을 30일로 하는 C-3-3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환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위 환자는 당초에는 입국 후 20 여 일 내에 간단한 수술 및 모든 치료를 마치고 관광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련 질환의 추가 발견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만으로도 최소 1달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체류기간을 한 달 정도만 늘릴 수 있다면, 즉 입국 후 60일 정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면 원하는 진료를 모두 마치고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 답 변

- 의료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내체류 중에 발생한 비용내역,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례 6번 답변 참조).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Q&A(2019)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8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각 국가별 체류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요?

### 답 변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열거된 각 사유에 관한 허가 대상 및 허가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위 인터넷 주소 그대로 이용, 최종 수정일 2023.5.23).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국민 (2023.01.02. 현재 45개국)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 제주 단체 환승객
  -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 제주무사증 입국자
  -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 
-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사증면제 체결국가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하이코리아>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무사증입국>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정보광장/출입국·체류 안내/출입국심사)

◆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 (외국인이 우리나라 방문시) ◆

구분	국가/지역		
아주지역 (9개)	대만(90일/상호주의)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일본(90일/상호주의)
	마카오(9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협정)	홍콩(90일/상호주의)
	말레이시아(3개월/협정)	태국(90일/협정)	뉴질랜드(90일/협정)
미주지역 (32개)	가이아나(30일/상호주의)	브라질(90일/협정)	온두라스(3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우루과이(90일/협정)
	그레나다(90일/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협정)	자메이카(90일/협정)
	니카라과(90일/협정)		칠레(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도미니카(연)(90일/협정)	수리남(90일/협정)	코스타리카(90일/협정)
	멕시코(3개월/협정)	아르헨티나(90일/상호주의) * 22.10.1.부터 적용	콜롬비아(90일/협정)
	미국(90일/상호주의)	아이티(90일/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바베이도스(90일/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파나마(90일/협정)
	바하마(90일/협정)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협정)	엘살바도르(90일/협정)	페루(90일/협정)
유럽지역 (43개)	교황청(30일/일방적 면제)	몰타(90일/협정)	안도라(30일/상호주의)
	그리스(3개월/협정)	벨기에(3개월/협정)	알바니아(30일/상호주의)
	네덜란드(3개월/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일/상호주의)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협정)
	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사이프러스(30일/상호주의)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산마리노(30일/상호주의)	영국(90일/협정)
	독일(90일/협정)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오스트리아(90일/협정)
	라트비아(90일/협정)	불가리아(90일/협정)	이탈리아 (90일/협정 및 상호주의)
	러시아(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협정)	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체코(90일/협정)
		스위스(3개월/상호주의)	카자흐스탄(30일/협정)
	루마니아(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터키(90일/협정)
	룩셈부르크(3개월/협정)	스페인(90일/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상호주의)
	리투아니아(90일/협정)	슬로바키아(90일/협정)	폴란드(90일/협정)
	리히텐슈타인(3개월/협정)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프랑스(90일/협정)
	모나코(30일/상호주의)	아이슬랜드 (180일 중 90일/협정)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몬테네그로(30일/상호주의)	아일랜드(90일/협정)	헝가리(90일/협정)	

구분	국가/지역		
아프리카· 중동지역 (16개)	모로코(90일/협정)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30일/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협정) * 2019.7.18. (목) 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모리셔스(30일/상호주의)	오만(30일/일방적 면제)	레소토(60일/협정)
	세이셸(30일/상호주의)	카타르(90일/협정)	이스라엘(90일/협정)
	사우디아라비아 (30일/일방적 면제)	쿠웨이트(90일/일방적 면제)	튀니지(30일/협정)
	아랍에미리트(90일/협정)	바레인(30일/일방적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상호주의)
	보츠와나(90일/상호주의)		
대양주 (13개)	팜(90일/상호주의)	나우루(30일/일방적 면제)	뉴질랜드(3개월/협정)
	마셜군도(30일/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 (30일/상호주의)	사모아(30일/상호주의)
	솔로몬군도(30일/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통가(30일/상호주의)
	투발루(30일/상호주의)	팔라우(30일/상호주의)	피지(30일/상호주의)
	호주(90일/일방적 면제)		

※ 출처 :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웹페이지(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비자

## 9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문의 사례) 무사증허가 대상국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해서 여행도 하고 병원 상담을 받은 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국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K-ETA란 무엇이고, 무사증으로 입국 시 K-EAT가 필수인가요?

### 답 변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 신청 자격: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7개국) 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지역(45개국)
-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K-ETA는 필수입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2시간 내 [공식 홈페이지/모바일앱] - [K-ETA 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방문의 해(’23년~’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4.1.부터 2024.12.31.까지 아래 22개 국가·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합니다. (2023.09.29. 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
  - \*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면제 대상 국가·지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ETA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ETA 웹사이트([www.k-eta.go.kr](http://www.k-eta.go.kr))

## 10 ● 사증 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문의 사례) 저는 일본인으로, 서울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일본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협정상의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소개해 준 에이전시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하였으므로 체류자격의 '변경'과는 무관하지 않을까요? 제가 치료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나 세부 절차는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절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한편 90일을 넘겨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민등록 비슷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며, 각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협정상의 체류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협정상의 일반적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 위 설명을 귀하에게 적용해 보면, 귀하는 사증면제국 소속 국민으로서 '사증면제(B-1)'라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체류자격에 따른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로서 이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일 귀하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체류자격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에이전시 측에서 귀하께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진료 목적의 체류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 G-1-10(치료요양비자) 비자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G-1-10 비자는
  -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에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G-1(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 생략
  -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체류자격 변경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기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대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 환자를 대리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등록 문제입니다. ‘외국인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등 체류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나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 동법 제10조(체류자격)
- ◆ 동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 ◆ 동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 ◆ 동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 동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 동법 제31조(외국인등록)
-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10.] [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 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사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사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 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 (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 (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 (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홍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 (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24. 거주 (F-2)</p>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li> </ol> <p>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삭제 &lt;2022. 12. 27.&gt;</p>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25. 동반 (F-3)</p>	<p>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다만, 거주(F-2)의 체류자격 중 타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26. 재외동포 (F-4)</p>	<p>「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27. 결혼이민 (F-6)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8. 관광취업 (H-1)	<p>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p>
29. 방문취업 (H-2)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li> <li>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li> <li>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li> <li>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li> <li>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li> <li>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li> </ol> <p>나. 활동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li> <li>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E 및 대분류G부터 대분류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작물 재배업(011)</li> <li>나) 축산업(012)</li> <li>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li> <li>라) 연근해 어업(03112)</li> <li>마) 양식 어업(0321)</li> <li>바) 금속 광업(06)</li> <li>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li> </ol> </li> </ol>

	<p>아) 삭제 &lt;2022. 12. 27.&gt;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삭제 &lt;2022. 12. 27.&gt;  타) 삭제 &lt;2022. 12. 27.&gt;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삭제 &lt;2022. 12. 27.&gt;  거) 삭제 &lt;2022. 12. 27.&gt;  너) 삭제 &lt;2022. 12. 27.&gt;  더) 삭제 &lt;2022. 12. 27.&gt;  러) 삭제 &lt;2022. 12. 27.&gt;  머) 삭제 &lt;2022. 12. 27.&gt;  버) 삭제 &lt;2022. 12. 27.&gt;  서) 삭제 &lt;2022. 12. 27.&gt;  어) 삭제 &lt;2022. 12. 27.&gt;  저) 삭제 &lt;2022. 12. 27.&gt;  처) 삭제 &lt;2022. 12. 27.&gt;  키) 삭제 &lt;2022. 12. 27.&gt;  티) 삭제 &lt;2022. 12. 27.&gt;  피) 삭제 &lt;2022. 12. 27.&gt;  히) 삭제 &lt;2022. 12. 27.&gt;  고) 삭제 &lt;2022. 12. 27.&gt;  노) 삭제 &lt;2022. 12. 27.&gt;  도) 삭제 &lt;2022. 12. 27.&gt;  로) 삭제 &lt;2022. 12. 27.&gt;  모) 삭제 &lt;2022. 12. 27.&gt;  보) 삭제 &lt;2022. 12. 27.&gt;  소) 삭제 &lt;2022. 12. 27.&gt;  오) 삭제 &lt;2022. 12. 27.&gt;  조) 삭제 &lt;2022. 12. 27.&gt;  초) 삭제 &lt;2022. 12. 27.&gt;  코) 삭제 &lt;2022. 12. 27.&gt;  토) 삭제 &lt;2022. 12. 27.&gt;  포) 삭제 &lt;2022. 12. 27.&gt;  호) 삭제 &lt;2022. 12. 27.&gt;  구) 삭제 &lt;2022. 12. 27.&gt;  누) 삭제 &lt;2022. 12. 27.&gt;  두) 삭제 &lt;2022. 12. 27.&gt;  루) 삭제 &lt;2022. 12. 27.&gt;</p>
--	--

	<p>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p> <p>가) 수도업(36)</p> <p>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p> <p>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p> <p>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p> <p>마) 수상 운송업(50)</p> <p>바) 항공 운송업(51)</p> <p>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p> <p>(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p> <p>(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p> <p>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p> <p>자) 우편 및 통신업(61)</p> <p>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p> <p>카) 정보서비스업(63)</p> <p>타) 금융업(64)</p> <p>파) 보험 및 연금업(65)</p> <p>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p> <p>거) 부동산업(68)</p> <p>너) 연구개발업(70)</p> <p>더) 전문 서비스업(71)</p> <p>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p> <p>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p> <p>버)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p> <p>서) 교육 서비스업(85)</p>
30. 기타 (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1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문의 사례) 진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환자입니다. 메디컬비자를 신청할 때 간병 등을 도와 줄 동반자에 대한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단순한 친구도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이나 사증 문제 등을 유선상으로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별도의 콜센터가 있나요?

### 답 변

-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입니다.
  -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동반가족이 아닌 제3자 외국인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 귀하께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비자 신청 시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정보광장-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통합 안내매뉴얼(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3.09.20))

## 12 ● 체류기간 초과자의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연장

(문의 사례) 단기관광 비자로 한국을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데, 치료를 마칠 때까지 만이라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에 자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체류할 수 있으나,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불법체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국번없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 13 ● 보호자의 비자연장 대리 신청

(문의 사례) 외국인 환자가 다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보호자가 대신하여 환자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대리인 비자연장 신청 시, 대리인 범위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 중증환자 등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법인의 경우 외국인 환자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 외국인 환자 본인의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동반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별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제1조(목적), 제2조(대리인의 자격),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외교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li> <li>•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li> </ul>
공무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li> <li>•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li> </ul>
협정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li> <li>•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li> </ul>
일시취재 (C-1) 취재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 기관 직원</li> <li>•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li> </ul>
의료관광 (C-3-3, G-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li> <li>• 중증환자 등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법인의 경우 외국인 환자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li> <li>• 외국인 환자 본인의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동반 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li> </ul>
단기상용 (C-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li> <li>•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li> </ul>
단기방문 (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li> <li>•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단기취업 (C-4)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 (E-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li> <li>•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li> <li>•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li> <li>•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한 선원 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li> </ul>
문화예술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li>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li> <li>•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li> </ul>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유학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li>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기술연수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li> </ul>
일반연수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li>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종교 (D-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li> </ul>
주재 (D-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li> <li>•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li> </ul>
기업투자 (D-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li> <li>•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li> </ul>
무역경영 (D-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li> <li>•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li> <li>•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li> </ul>
구직(D-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할 기업체 등의 직원</li>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재외동포 (F-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li>•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li> <li>•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li> <li>•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li> <li>•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li> <li>•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 (F-3자격 소지자에 한함)</li> </ul>
영주(F-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결혼이민(F-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기타 (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을 초청한 자</li> <li>• 본인을 치료하는 자</li> <li>• 본인의 소송대리인</li> <li>•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li> </ul>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li> <li>•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ul>

## 14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 신청

(문의 사례) 최근 한국에서는 출입국 체류 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사전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4~6시간의 장시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예약이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답 변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 기간 이내에 방문예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대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대리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Q&A(2019)

## 15 ● 불법체류자 발생 시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한국에 입국한 뒤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비자를 발급해준 병원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 답 변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발생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비자를 발급한 후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정지(사안에 따라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등)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재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초청자의 행정제재  
 ※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7호

신청일(또는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불법체류 발생 인원

X 100

신청일(또는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입국한 인원

불법체류율 산식 (단위: %, 소수점 이하 반올림)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 기준]

제재종류 입국인원	서면경고	1월 정지	3월 정지	회원자격 취소
1~10명	총 1명 발생	총 2명 발생	총 3명 발생	총 4명 이상 발생
10~20명	총 2명 발생	총 3명 발생	총 4명 발생	총 5명 이상 발생
21명 이상	불법체류율 5%~15%	불법체류율 16%~20%	불법체류율 21%~30%	불법체류율 31%이상

- ※ 총 발생원인은 신청일(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인원을 말함
- ※ (최근 3개월 이내 행정제재가 있는 경우) 최근 행정제재 이후의 최근 6개월간 입국인원과 불법체류자 비율로 산정하되, 행정제재 이전의 입국 및 불법체류인원은 미포함
- ※ 회원자격은 비자포털([www.visa.go.kr](http://www.visa.go.kr)) 회원자격을 의미함

단, 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산정한 제재종류보다 1단계 상향(우수 유치기관은 적용 제외)

○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

-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3개월 이상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우수유치기관 자격 취소
  - \* 우수 유치기관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일반 유치기관으로 지위 변경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2022.12.29. 개정)

## 16 ● 외국인환자 초청장 발급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환자측에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데 초청장 서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식이 없다면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와 초청장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초청장은 법정 양식이 아니므로 초청 **의료기관에서 임의 작성 가능**하며, 초청장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초청목적, 사유, 질병 관련 사항, 스케줄,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일반 비자 초청장과 동일합니다.

※ 출처 : 하이코리아 (2023.09.20.)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메뉴얼

## 17 ● 두 개 이상 의료기관 중복 방문 가능 여부 (메디컬비자 발급 시)

(문의 사례) 메디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체류 중 타 의료기관에서 중복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연장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척추관절 치료를 위해 A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B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기간이 길어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답 변

-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시 예약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길어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실제로 사증발급 당시 예정되었던 A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해당 사증 발급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해당 외국인환자가 추후 의학적 필요성에 의거하여 B의료기관에서 추가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의료관광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장기 체류의 필요성,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등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검토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만일 치료기간이 길어져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90일 초과 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요).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Q&A(2019)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18 ● 비자 발급 대행기관의 자격 요건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가 의료관광비자 대리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관광비자(C-3-3) 발급 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표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2.12.29. 개정)

## 19 ● 메디컬비자 신청 가능 횟수

(문의 사례)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을 경우, 재신청 횟수 및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답 변

- 의료관광비자 신청 불허 시,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을 통한 사증신청은 재신청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이 없으나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관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재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Q&A(2019)

## 20 ● 불법체류자의 비자 재신청

(문의 사례)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적 있어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귀하가 거주 중인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입국규제 여부 및 규제 해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규제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규제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입국규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입국규제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과 사증 (해당되는 경우)이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 자격에 맞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등을 심사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사관에서 최종 입국허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불가하며 귀하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 과정을 통하여 최종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Q&A(2019)

####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입국심사)
- ◆ 동법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 III.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국민건강보험

1.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63
2.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재취득 | 66
3.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 67
4.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 69
5.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 71
6. 외국인 신생아 및 그 밖에 경우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74



## 1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문의 사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려는 외국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자격 및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격에 따른 보험 종류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으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li> <l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li> <li>-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li> </ul> </li> </ul>
지역가입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7.16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의무가입) 다만, 결혼이민(F-6)의 경우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일(입국일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를 참고해주세요</li> </ul> </li> </ul>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가입방법 및 자격취득시기를 설명 드리면,
- 직장가입의 경우, 사용자(고용인)이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가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취득됩니다.
  - 지역가입의 경우, 최초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별도의 가입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결혼이민(F-6)의 경우만 입국일로 취득합니다.)

○ 보험료는

-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9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만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소득, 재산, 자동차)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며, 이 외의 체류자격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적용 및 산정, 부과합니다.  
다만,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의 납부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전(前)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외국인 민원센터 운영

- 주요업무는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 민원센터 안내]

지역	관할센터	주소
서울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 시흥, 군포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2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재취득

(문의 사례) 제 동생네 부부 문제로 질문합니다. 동생은 폴란드 사람과 결혼했고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현재는 폴란드에 사는 중이며, 아직 부모님 호적에 동생, 폴란드 며느리, 자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 며느리가 폴란드 의술로는 힘든 병을 앓게 되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만, 이럴 경우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 제5조)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건강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법 제10조)
-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건강보험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의 외국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말씀하신 상황에 기초할 때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재외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민원안내

### ■ 관련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

### 3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문의 사례)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외국인입니다. 저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한 번 받았고, 얼마 전 연장된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이지만 사업상 돌보아야 할 일들이 있어 출국을 몇 주 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감 때문에 동네 병원을 방문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제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도 있나요?

#### 답 변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귀하는 현재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직장가입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한 날의 다음 날</li> <li>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li> <li>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li> <li>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li> <li>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li> <li>6.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ol>
지역가입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한 날의 다음 날</li> <li>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li> <li>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li> <li>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li> <li>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li> </ol>

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출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 관련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 동법 시행규칙 [별표9]

## 4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문의 사례)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배제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장가입 배제를 위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 답 변

-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가입 제외가 가능한데, 첫째,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컨대, 프랑스 국민은 2007. 6. 1. 이후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둘째,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및 신청방법
  - 해당 외국인의 사용자(고용주)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를 경우에 나누어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한 사실  
증명 서류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건강보험안내/자격/취득/가입/직장가입자)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6.30.] [보건복지부령 제810호, 2021.6.30., 일부개정]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5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문의 사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 답 변

#### ○ 가입 절차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본문, 별표 9 참조).

체류자격 구분	가입시기(적용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1. 2. 5., 1쪽]

- √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2021. 2. 26. 발령, 2021. 3. 1. 시행) 제4조제4항 및 별표 1).

체류자격	제출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li> <li>• 소득 및 재산의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li> <li>-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li> <li>- 자동차등록증</li> <li>-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li> <li>-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li> </ul> </li> </ul>
유학(D-2) 일반연수(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li> <li>•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li> </ul>

○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 및 별표 2제1호).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 건강보험료의 납부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http://www.easylaw.go.kr))>외국인유학생>국내생활>의료

## 6 외국인 신생아 및 그 밖에 경우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문의 사례) 외국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위한 조건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부 또는 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그 취득일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인 경우,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 부모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있어도 신생아 출생 이후에 취득한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 그 밖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며,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는 입국일로 자격을 취득
- 세부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제도소개 > 건강보험 안내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건강보험안내/외국인·재외국민건강보험제도안내)

# IV.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1. 의료기관 소개 및 병원 추천 문의 | 77
2.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 78
3.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79
4. 외국인환자 진료비 문제 | 80
5. 미용·성형 진료비 관련 | 82
6.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 83
7.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리진료 | 84
8. 진료기록 대리 열람·발급 문제 | 85
9.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범위 | 86
10. 외국인환자 진료서식 문의 | 87
11. 외국인환자가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방문한 경우 | 88
12. 초진 후 재진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 89
13. 외국인 무료진료소 | 90
14.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 97
15. 외국인환자가 온라인에 악성 게시글 게재하는 경우 | 98
16.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지 | 99
17. 통역 서비스 지원 | 100



## 1 의료기관 소개 및 병원 추천 문의

(문의 사례) 저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사람입니다. 사고로 발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외국인 환자가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다음 절차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방법

- ①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www.medicalkorea.or.kr/korp](http://www.medicalkorea.or.kr/korp)) 접속
- ② 오른쪽 상단에 “유치기관 현황” 선택
- ③ 검색 옵션 → 유치기관 구분, 유치기관 상태 및 지역과 유치대상국가 선택 후 조회 → 의료기관 안내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http://www.medicalkorea.or.kr/korp))에서는 외국인 환자뿐만 아니라 유치업체도 특정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검색하고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료과목에 대한 정보

→ 통합의료관광웹사이트([www.medicalkorea.or.kr](http://www.medicalkorea.or.kr)) 접속하여 Most Visited Medical Institutions 조회 → 지역, 진료과목별 병원 정보 제공  
\* 통합의료관광웹사이트([www.medicalkorea.or.kr](http://www.medicalkorea.or.kr))에서는 외국인환자 전용 한국의료서비스 검색사이트로서 진료과목별 한국의료 서비스 및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합의료관광웹사이트([www.medicalkorea.or.kr](http://www.medicalkorea.or.kr))

외국인환자유치기관정보웹사이트([www.medicalkorea.or.kr/korp](http://www.medicalkorea.or.kr/korp))

## 2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사례) 중국 상해에 거주하는 중국인입니다. 휴가를 맞아 한국에서 피부·성형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피부·성형은 유명한데 요새 매체를 보니 한국에서 성형을 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뉴스를 간간히 본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피부·성형서비스를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수술을 요하는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아울러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① **수술의사의 자격여부:** 수술 담당 의사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자주 해당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형외과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인지 확인: <http://www.prskorea.co.kr/>
  - ② **다양한 시술(수술)을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외국인환자의 경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시술(수술)을 일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 사고 또는 결과불만족이 야기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③ **지출비용 관련:**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진료비 중 포함·불포함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사후 추가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④ 유치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용하는 **유치업체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을 마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외국인환자유치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유치업체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유치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담보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치업체등록 여부 확인: <http://www.medickorea.or.kr>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http://www.mohw.go.kr))

### 3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문의 사례) 미국에 거주 중인 교민입니다. 코로나19로 왕래가 어려워져 약 대리처방을 알아보던 중 재외국민은 원격상담을 통해 한시적으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절차나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임시허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제특례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제한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진료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의료기관별로 임시허가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 ■ 관련법령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임시허가)제3항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제6항
- ◆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6(임시허가)

## 4 ● 외국인환자 진료비 문제

(문의 사례) 사업상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외국인입니다. 그동안 한국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은 내용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 한국인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문한 병원에 왜 저를 차별 하는지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병원 측에서는 한국인 환자들은 거의 전부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저는 비가입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외국인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제 지인은 모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시술의 가격을 인터넷 사이트에 뚜렷하게 게시해 놓고도 외국인인 제 지인에게 게시된 것보다 높은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에서는 병원들이 차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답 변

- 먼저, 귀하가 한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병원 측의 해명은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병원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적용항목(급여)과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단지 금액이 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진료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의 적용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의 문호를 상당히 넓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한국에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 귀하께서 입국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됩니다.
-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경우 급여진료에 관하여는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63조(시정 명령 등)

## 5 미용·성형 진료비 관련

(문의 사례) 휴가기간 동안 한국 의료기관에서 성형·피부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하고 한국인 친구가 말한 비용하고 제가 알아본 비용하고 다릅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진료비를 더 받는 것인지? 외국인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답 변

- 먼저, 귀하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원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적용항목(급여)과 건강보험 미적용(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차별적으로 진료비가 부과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급여항목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4항
-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3항

## 6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문의 사례) 약 1년 전 저희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통상 진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거의 진료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를 다시 진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 답 변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환자가 치료를 종료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과거 특정 시점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외국인환자의 의무기록(경과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등)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 동법 제89조(벌칙)

## 7 ●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리진료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의 특성상 한국 내 장기간 체류가 어려워 본국으로 귀국한 뒤 대리진료에 대한 요구가 빈번합니다. 국내 체류 시 실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 상담만을 위한 진료 시, 환자로부터 대리진료 위임장을 받아 위임받은 통역사 혹은 의료기관 직원이 상담을 대신해서 듣고 환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외국인 환자가 동일 진단명에 대한 추가 약 처방 및 진단서 요청 시, 통역사가 진료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해외 환자와 의료진간 통화(유선 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 진료에 따른 처방전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검체분석, 혈액분석 등)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외국인환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에 비하여 원격지(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진 사이에 유선 또는 영상통화를 통하여 진단(문진, 시진 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원격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의료기관)에서 현지 의료인이 원격지의료인으로부터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받는 것에 한정됨
-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원격지에 있는 외국인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은 위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처방전 발급에 관하여도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는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임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격지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34조(원격의료)

## 8 ● 진료기록 대리 열람·발급 문제

(문의 사례)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 모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입수하고자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기록을 복사해 주겠다고 합니다만, 해당 환자는 저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진료기록을 복사한 후 인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외국인 환자를 대신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해당 외국인환자의 가족은 아니고 지인일 뿐입니다.

### 답 변

-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비록 환자의 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환자 본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위임받았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① 귀하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것) 및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것).
    -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 9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범위

(문의 사례) 국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환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라 처방을 받지 못하는데 환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대신해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 변

-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환자가 장기간 해외체류로 국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우며,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대리수령자: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 동행한 자로 유치의료기관의 국제진료코디네이터, 간호사 등 해당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과 아래의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
    -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시설종사자(간호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등)는 재직증명서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10 • 외국인환자 진료서식 문의

(문의 사례) 저희는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 외국인환자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의료통역사를 섭외하고는 있지만 모든 외국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를 둘러싼 의료사고를 보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관련된 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혹시 유치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각종 계약서·동의서 등 서류 작성 시에는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외국어로 게시할 것)
  -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편익을 위하여, 외국인환자가 자주 찾는 진료과목의 시술 설명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다국어 서식집**」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http://www.khidi.or.kr)) > 동향과 정보 > 의료서비스 발간물 > 해외환자유치
- 다만, 해당 자료를 활용하실 때에는 각 기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의료정책과-3760 (2020.06.21.),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http://www.khidi.or.kr)) (동향과 정보/의료서비스 발간물/해외환자유치)

## 11 ● 외국인환자가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방문한 경우

(문의 사례) 명동에 신규개업한 의료기관입니다. 얼마 전부터 외국인이 저희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당분간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가 계속 찾아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제2조 제3호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에 관하여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면 해당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만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수가 많거나 귀원이 직·간접적으로 외국인환자들에게 진료예약, 진료정보 제공 등을 하였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것인바, 귀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기관정보사이트(<https://www.medicalkorea.or.kr/>)에서는 수시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할 경우 언제 든 제출서류를 구비 하시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12 ● 초진 후 재진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문의 사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병원입니다. 개별 외국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한 후 동일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계속 찾아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개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초진을 실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환자에 대하여 재진 또는 2회 이상의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미등록 유치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재진 또는 2회 이상의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하시거나 인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기관정보사이트(<https://www.medicalkorea.or.kr/>)에서는 수시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제출서류를 구비 하시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동법 제28조(벌칙)

## 13 ● 외국인 무료진료소

(문의 사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가고 싶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병원에 방문하기 꺼려집니다. 혹시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소가 있는지요?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진료소를 알려 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 무료진료소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 및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증상이 심하거나 복잡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변동사항이 많으니 방문 전 각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① 라파엘클리닉 [서울 성북동 진료소/사무국]

• 진료이용: 주 1회 / 매주 일요일 10:00~17:00

• 위치안내: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라파엘센터

• 전화번호: 02-763-7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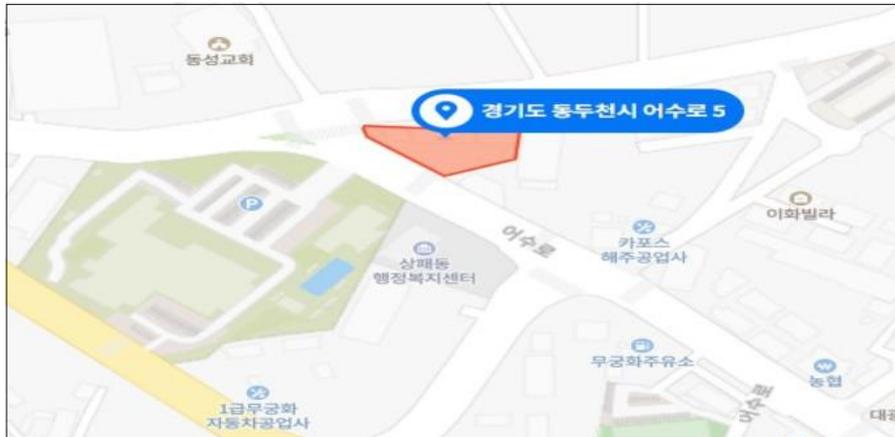
\* 진료과의 경우 일정하지 않으니 자세한건 라파엘클리닉에 직접문의 요함

\* 치과의 경우 수/토 운영되나 전화예약이나 방문예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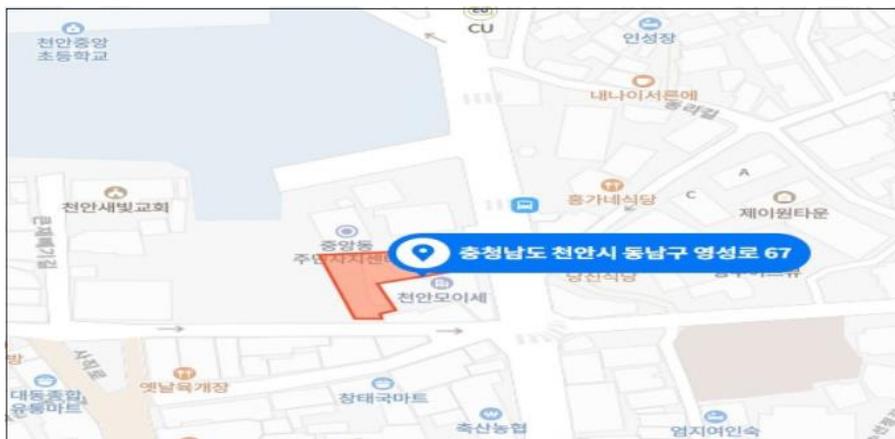
② 라파엘클리닉[동두천분소]

- 진료이용: 일요일 11:00~14:00
- 위치안내: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5(상패동) 2층 라파엘클리닉
- 전화번호: 02-763-7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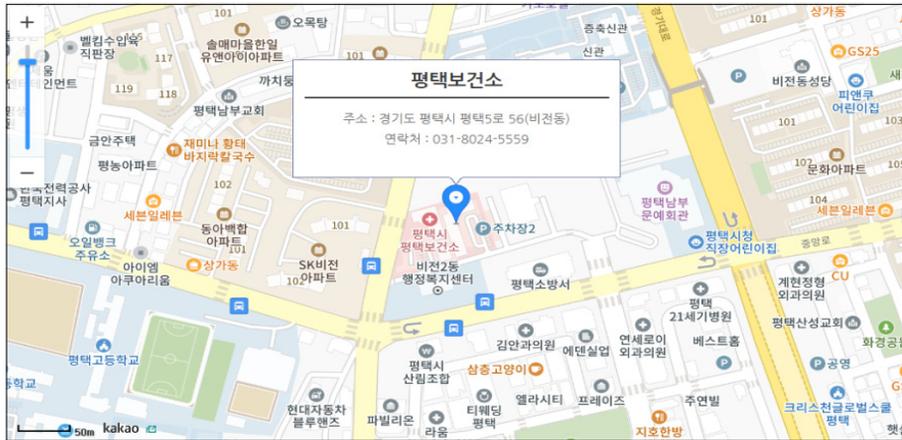
③ 라파엘클리닉[천안분소]

- 진료이용: 일요일 10:30~14:00
- 위치안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67(오룡동) 2층 라파엘클리닉 천안모이세분소
- 전화번호: 02-763-7595
- \* 내과 외과 격주운영 / 자세한건 라파엘클리닉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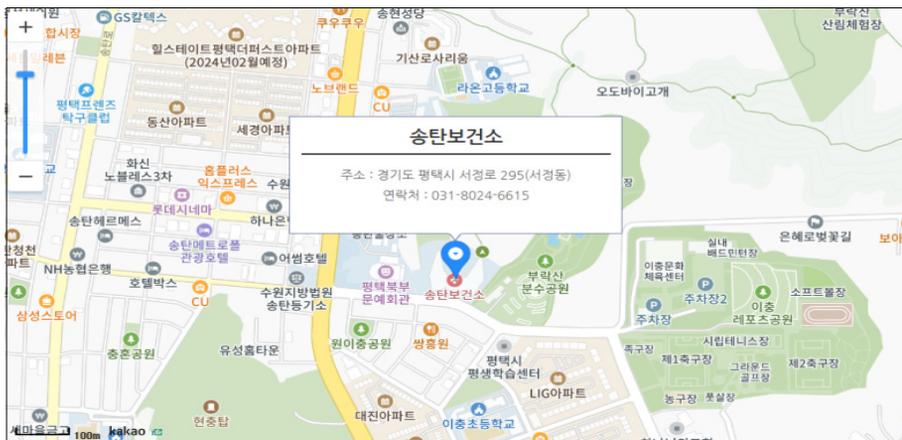
④ 평택 보건소 외국인무료진료소

- 진료이용: 월 1회 / 둘째 주 일요일 15:00~18:00
- 위치안내: 평택치매안심센터 2층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25)
- 전화번호: 031-8024-4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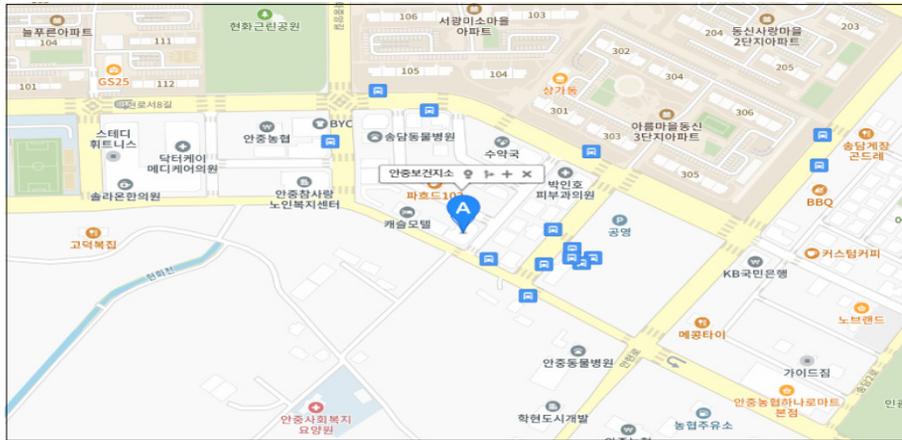
⑤ 송탄보건소 외국인 무료진료소(평택)

- 진료이용: 월 1회 / 넷째 주 일요일 14:00~16:00
- 위치안내: 송탄보건소 2층 (평택시 서정로 295)
- 전화번호: 031-8024-6615



⑥ 안중보건지소 외국인 무료진료소(평택)

- 진료이용: 월 1회 / 셋째 주 일요일 14:00~17:00
- 위치안내: 안중보건지소 2층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4)
- 전화번호: 031-8024-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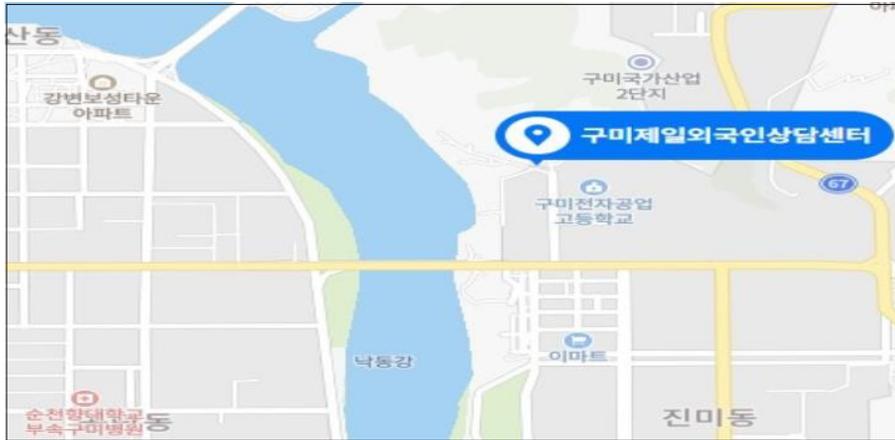
⑦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

- 진료이용: 주 1회 / 매주 일요일 14:00~17:00
- 위치안내: 대전시 중구 목척7길6(은행동),외국인복지관 1층
- 전화번호: 042-631-6242



⑧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 진료이용: 월 1회 / 둘째 주 일요일 13:00~15:00
- 위치안내: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로 74 제일교회
- 전화번호: 054-471-8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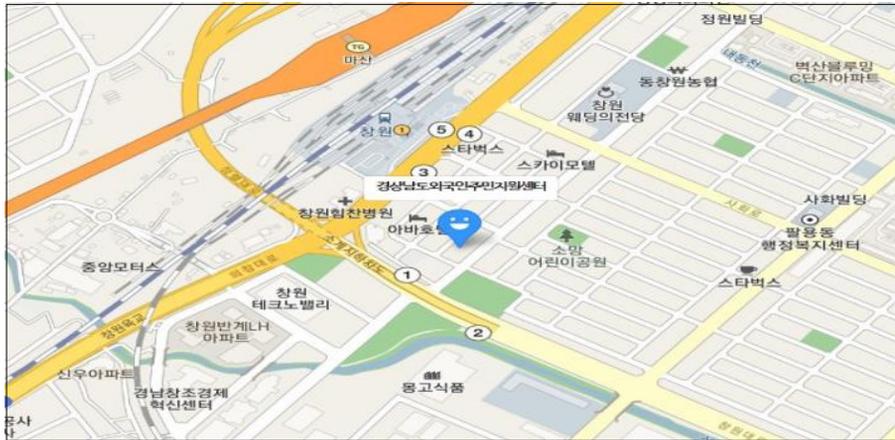
⑨ 그린닥터스

- 진료이용: 주 1회 / 매주 일요일 14:00~16:00
- 위치안내: 부산진구 당감동 온종합병원 6층 국제진료센터
- 전화번호: 051-816-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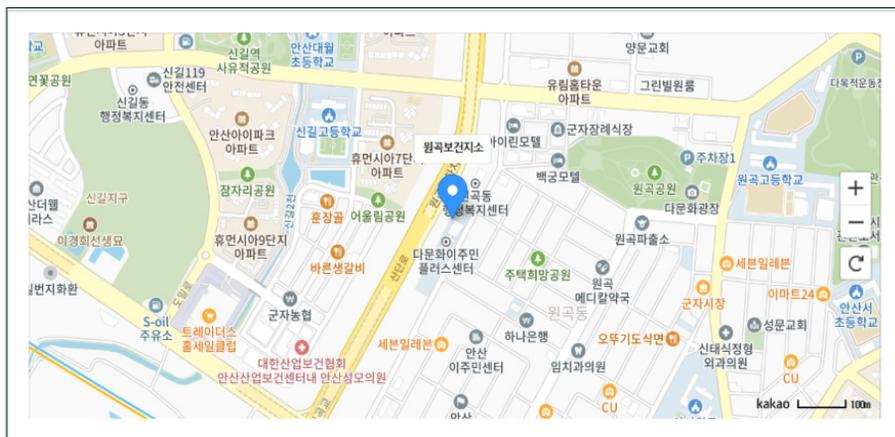
⑩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진료이용: 주 1회 / 매주 일요일 14:00~16:00
- 위치안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 4층
- 전화번호: 055-256-8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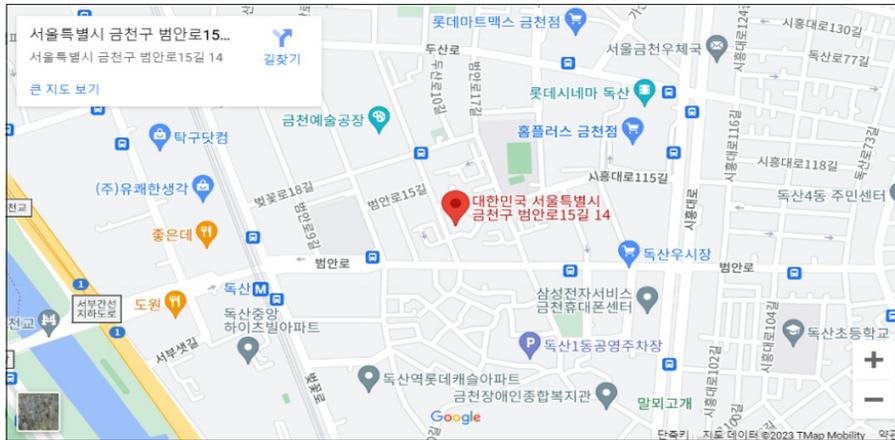
⑪ 원곡 보건지소(안산)

- 진료이용: 연중
- 위치안내: 원곡보건소(원곡동 991-1)
- 전화번호: 031-481-3608



⑫ 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무료진료소

- 진료이용: 주1회 / 매주 일요일 15:30~17:20
-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14, 덕우빌딩 2층 (독산동)
- 전화번호: 02-854-7828



※ 출처 : 라파엘클리닉(raphael.or.kr)라파엘활동)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  
평택보건소)의료기관안내)외국인무료진료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www.djmc.org)사업안내)무료진료  
구미시보건소(www.gumi.go.kr)보건사업)기타사업)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그린닥터스(greendrs.cafe24.com)외국인국제진료소)외국인 무료진료소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www.gnmigrant.or.kr)주요사업)복지  
안산시상록구보건소)진료및검사안내)외국인진료  
희년의료공제회)사업소개)무료진료소

## 14 ●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가 본국으로 귀국 후 저희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온라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의무기록 사본을 이메일 송부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 변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했으며, 이 경우 환자가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환자로부터 의무기록사본발급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하여 해당 환자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의무기록 사본을 전자적 형태(이메일 등)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정확하게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15 ● 외국인환자가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 게재하는 경우

(문의 사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저희 기관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병원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저희가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 답 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가중처벌.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름).
- 위 규정에 의할 때, 외국인환자가 단순히 수술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익적 목적을 넘어 의료기관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게시한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적 대응방법: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해당 외국인환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
  - 민사적 대응방법: 관할 법원에 명예훼손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 ■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16 ●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 사례)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외국인환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진료비를 결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현행 의료법상 진료비 결제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암호화폐를 통하여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반면, 그 할인의 폭이 과도한 경우(보건의료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수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바, 비록 암호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화폐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진료비를 과도하게 할인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만일 암호화폐 사업자 또는 거래소 등이 의료기관을 해당 암호화폐의 가맹점으로 홍보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암호화폐 사업자 또는 거래소에 소정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는 **암호화폐 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한 것으로 평가되어 의료법 위반(환자유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 17 ● 통역 서비스 지원

(문의 사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병원에 내원했는데 베트남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없습니다. 저도 영어를 할 수 없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 답 변

- 의료를 포함한 한국 생활 시 필요한 전반적인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복잡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엔 의료 관련 전문적인 인력에 도움을 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한국생활정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지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라오스어, 몽골어, 네팔어 등
- BBB 코리아 통역 지원 (1588-5644)
  - 어플 다운로드 후 통화 가능한 봉사자에게 연결
  - 지원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 출처: 한국생활정보 다누리콜센터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BBB 코리아 통역 지원 (<https://www.bbbkorea.org/ko/> 이메일 [bbb@bbbkorea.org](mailto:bbb@bbbkorea.org))

# V.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관련 | 103
2. 관할 시도 문의처 보기 | 105
3.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유치업체의 경우) | 106
4. 동일 의료기관(분점)의 신규 유치기관 등록 | 108
5.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의료기관의 경우) | 109
6.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갱신신청 만료 기간 | 111
7.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시 보험 가입 문의 | 112
8.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개인이 외국인환자 소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13
9.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외국인환자를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경우) | 114
10.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유치등록 의료기관간 외국인환자 알선수수료 지급 불법여부) | 115
11. 유치업체 추천 문의 | 116
12.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문의 | 117
13. 의료해외진출법 역외적용 | 118
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관련 | 119
15.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선의로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경우) | 121
16.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미등록 여행사가 관광객의 요구로 수수료 없이 국내 의료기관 소개하는 경우) | 122
1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 (KAHF) | 123
18. 적정 유치 수수료를 | 125
19.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혜택 | 126
20. 성형·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 127
21.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치등록 필요 여부 | 128
22. 해외홍보시 진료과목 표기 | 130
23.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및 시스템 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 | 131



## 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관련

(문의 사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며, 유치등록기관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답 변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020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일괄이양법」(20.2.18. 공포, '21.1.1. 시행)이 제정되었습니다.
-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중 의료해외진출법 지방이양의 대상 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의료해외진출법 지방이양 대상사무 현황 (시행일: 2021.1.1.) 〉

	사무	조항	이양대상 기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 권한	제6조제1항·제3항	국가 → 시·도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권한	제6조제2항·제3항	국가 → 시·도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업실적보고 권한	제11조제1항	국가 → 시·도
4	시·도지사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업실적통보 의무	제11조제2항	시·도 사무 신설
5	시정명령 권한	제22조제1항·제2항	국가 → 시·도
6	등록취소 권한	제24조	국가 → 시·도
7	과징금 부과 권한	제26조	국가 → 시·도
8	포상금 지급 권한	제27조제1항	국가 → 시·도
9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제31조제2항	국가 → 시·도

○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지방이양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지방이양 업무 범위 〉

등록관리	실적관리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기관 등록 및 갱신</li> <li>등록 유치기관 자격관리 모니터링</li> <li>각종 민원 응대 및 요청자료 회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기관 대상 실적 제출 독려 (유·무선 안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 유치기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li> <li>불법 유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li> <li>유치기관 행정처분 (실적 미보고 기관 등록취소 등)</li> <li>유치기관에 대한 교육</li> </ul>

○ 지방이양의 기관별 역할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제도 총괄(복지부), 유치 기관 등록·실적 등 관리(지자체), 복지부·지자체 지원 총괄(진흥원)로 규정합니다. 단, 지방이양 사무 관련 의료 해외진출법 하위법령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기관별 역할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9월 기준)

〈 지방 이양에 따른 기관별 역할 〉

실무범위	지자체(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소관 유치 기관 등록·갱신·자격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지원 총괄 (유치기관 등록지침 제작·배포)</li> </ul>
유치실적 조사 및 통계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소관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실적자료 취합</li> <li>유치기관 실적보고 독려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자체별 실적자료 통계·분석 (통계분석 보고서 제작·발간 등)</li> </ul>
유치기관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별 유치기관 교육 및 지원</li> <li>불법 유치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포상금 운영</li> <li>유치기관 현장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기관 교육자료 등 지자체 지원</li> <li>불법 유치행위 모니터링 지원 (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li> <li>유치기관 현장점검 지원</li> </ul>
유치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여받은 권한을 통하여 지자체별 소관 지역 유치기관 전산 관리 업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정보시스템 구축·관리, 통합 메뉴얼 제작·배포</li> <li>권한 부여·관리를 통해 지자체별 담당자의 전산 업무 수행 지원</li> </ul>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 2 관할 시도 문의처 보기

(문의 사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사무 민원 문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관할 시도 문의처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문의 관할 시도 문의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명	담당부서	민원상담시간	민원대표전화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9:00 ~ 18:00	063-280-2443
경기도	보건의료과	10:00 ~ 17:00	031-8008-4746
울산광역시	식약안전과	09:00 ~ 18:00	052-229-3668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09:00 ~ 18:00	042-270-4822
광주광역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09:00 ~ 18:00	062-613-3782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	10:00 ~ 17:00	053-803-6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08:30 ~ 17:30	02-2133-9675
	비강남구	08:30 ~ 17:30	02-2133-9676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	09:00 ~ 18:00	051-888-3501-3506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9:00 ~ 18:00	032-440-2738
강원도	공공의료과	09:00 ~ 18:00	033-249-2436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9:00 ~ 18:00	043-220-3143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9:00 ~ 18:00	041-635-2644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09:00 ~ 18:00	061-286-5894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09:00 ~ 18:00	055-211-5043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09:00 ~ 18:00	064-710-2334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09:00 ~ 18:00	044-300-5714

※ 출처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문의처/등록현황 → 관할 시도 문의처 보기

### 3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유치업체의 경우)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광업체입니다. 올해까지는 내부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적인 준비만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매년 또는 매달 중에 등록신청을 받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등록요건 및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설명해 주십시오.

#### 답 변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갖추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요건**
  - 보증보험 가입(1억 원 이상, 1년 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 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등록 절차 및 방법**
  - 유치기관등록신청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절차 진행

STEP.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https://medicalkorea.khidi.or.kr>)

STEP. 2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STEP. 3 유치기관 등록 > 유치기관 등록신청 > 메뉴 선택

STEP. 4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STEP. 5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STEP. 6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 등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대표자 직인 및 날인) - 별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사업운영계획서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자유양식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개인	-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법인	- 정관 (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
일반여행업 등록	- 관광사업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및 실적보고 사무 민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관할 지자체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 4 ● 동일 의료기관(분점)의 신규 유치기관 등록

(문의 사례)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다 부산에 분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서울 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했으니 부산지점은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답 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로 구분하여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께서 서울지점에 대하여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산지점이 서울지점과 별개의 의료기관인 이상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부산지점에 대하여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은 후에는 서울지점과 별도로 해당 지점의 사업실적보고를 실시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5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문의 (의료기관의 경우)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및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dicalkorea.or.kr>)를 방문하시면 등록의 요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원하는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edicalkorea.or.kr>)를 참고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신 후 각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 \* 종합병원 이상: 2억 이상
    - \* 병·의원: 1억 이상
    - \* 피보험자: 의료기관/개별가입
    - \* 보험대상자: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

○ 구비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별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과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대표자 직인 및 날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의료기관 변경사항 일체 기재된 서류 사본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전문의 진료과목별 의사 명단(제출기관 직인 또는 서명 날인) -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1부 이상 제출 - 치과, 한의과는 치과(한의과)의사면허증 사본 제출(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사항)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가입 배상한도액은 의원급 또는 조산원 1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 - 의료인 개별 가입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별 보험 증명서류 제출 - 보장범위는 외국인환자를 반드시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개설허가증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단, 의료법인 등은 대표자가 상이할 수 있음) - 도로명 주소 표기
사업운영계획서	- 자유양식으로 작성 -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 6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갱신신청 만료 기간

(문의 사례) 유치등록을 한 후 3년이 지나 갱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7항,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은 3년마다 유치등록갱신을 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갱신신청을 해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등록기간 중에도 등록요건 유지는 필수사항이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동법 제29조(벌칙)

## 7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시 보험 가입 문의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위하여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 원, 종합병원은 2억 원**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인허가보증보험 보험요율 인하 안내

[주요 개편 내용]

-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보험요율(연) 인하: 변경 전 0.273% → 변경 후 0.17025% (약 37.6% 인하)
- \* 보험료(연) 변경 전 273,000원 → 변경 후 170,250원
- 적용시기: 2022.11.1.(화) ~ 추후 변경 전까지
- \* 2022.11.1.(화)부터 신규 등록 및 갱신 유치사업자 대상 일괄 적용 예정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 8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개인이 외국인환자 소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사례) 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관계상 중국 쪽에 지인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중 몇몇 분을 그 분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병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병원에서 일정 소개료를 받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의 주된 일은 무역업이기에 가끔 하게 되는 이 일(환자소개)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을 하는 자는 동법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귀하가 외국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앞서 살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 9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외국인환자를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경우)

(문의 사례) 국내의 한 기업에서 자신의 바이어를 수수료 없이 우리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 의료기관이 기업(유치업에 등록 하지 않음)에서 보내주신 바이어에게 진료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법 유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영리성 여부는 판단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해당 기업이 자신의 바이어(외국인환자)를 특정 의료기관과 연결함으로써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동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것이며,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마땅히 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기업이 바이어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추천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바이어가 어떠한 특혜도 받은바 없으며, 해당 바이어가 진료예약, 계약체결, 의료기관 방문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 동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10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유치등록 의료기관간 외국인환자 알선수수료 지급 불법여부)

(문의 사례) 유치등록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 유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답 변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간에 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인환자유치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11 유치업체 추천 문의

(문의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유치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영역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유치사업자를 선정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와 계약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유치사업자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선정 기준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역할 및 파트너십 전략 마련
  2. 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의 정도
  3. 과거 유치실적 확인 및 재무건전성 검토 필요
  4. 해당 타겟국가 설정에 따른 유치사업 전문성 및 다양한 활동성 확인
  5. 유치사업자의 사업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
- \* 해당 항목은 참고사항이며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리스트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법률전문가 법적 검토 자료 (2019)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 12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문의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 동종업계의 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해외환자유치업체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첫째,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받은 비용에 대해 한시적('11년 01.01~'12년 12.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13년 이후 영세율 일몰(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마다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둘째, 해외 유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기관(유치업체, 의료기관)은 해외 유치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불한 후, 해외환자유치업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대리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 13 ● 의료해외진출법 역외적용

(문의 사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만일 해외 유치사업자가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 국내 의료기관에 연계, 통역 등의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유치행위가 아닌지요? 만약 불법일 경우 해외 유치사업자 및 국내 의료기관 모두 처벌을 받는지요?

### 답 변

- 국가의 통치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및 국민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 바,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법규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대한민국헌법 제3조1) 및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헌법 제2조)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만일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이 역외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나 의료해외진출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해외진출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역외적용 불가)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해외 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이를 역외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외 에이전시는 의료해외진출법상 ‘미등록 유치사업자’로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동법 제28조(벌칙)
- ◆ 동법 제24조(등록의 취소)

## 14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관련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을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방법 및 미보고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법정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등록번호 및 출생연도</li> <li>- 성별</li> <li>- 국적</li> <li>- 외래 방문일수 (진료일자, 진료유형)</li> <li>- 진료과목</li> <li>- 입원기간(입퇴원 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등록번호 및 출생연도</li> <li>- 성별</li> <li>- 국적</li> <li>- 방문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유치기관 등록코드)</li> <li>-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진료일자)</li> <li>- 진료과목</li> <li>- 입국일 및 출국일</li> </ul>
법정 외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러시아 국가의 행정구역</li> <li>- 계약유형 (미군/글로벌보험/기타계약)</li> <li>- 진료비</li> </ul>	

※ 법정 외 항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정 항목 외 추가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보고)
- ◆ 동법 제22조(시정명령)
- ◆ 동법 제24조(등록의 취소)

## 15 ●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선의로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경우)

(문의 사례)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선교사 분이 몽골에 있는 한 아이의 손가락 수술을 위해 한국의 의료기관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해당 선교사는 등록된 유치업체 소속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불법유치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공익적 목적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다만, 만일 해당 선교사가 해당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 및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나, 그저 외국인환자유치등록 의료기관에게 해당 환자의 존재를 알렸을 뿐, 실질적인 진료예약 및 체결 등이 동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의료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6 ●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미등록 여행사가 관광객의 요구로 수수료 없이 국내 의료기관 소개하는 경우)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들의 요구로 한국 의료기관 이용을 연계해주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위법인가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영리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따라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없이 단체 관광객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하였다면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7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KAHF)

(문의 사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KAHF)」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내용과 인증 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인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AHF)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 평가신청 대상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 인증 포함)을 받은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평가체계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 평가체계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로 구성

\* 세부기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 안내 참고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환자안전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li> <li>2. 전문의 보유 및 환자진료체계</li> <li>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환자안전 보장활동</li> <li>5. 환자진료</li> <li>6. 의약품 관리</li> <li>7. 감염관리</li> <li>8. 시설 및 환경관리</li> </ol>

- 인증을 받은 유치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유치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 인력 고용 기반 조성
  -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인증기관 현황

연번	인증기관명	종별	소재지
1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북
2	조선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주
3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남
4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병원	경기
5	부산성모병원	병원	부산
6	부천세종병원	병원	경기
7	삼육부산병원	병원	부산
8	인천세종병원	병원	인천
9	한길안과병원	병원	인천
10	(의)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의원	서울
11	김병준레다스홍부외과의원	의원	부산
12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의원	경기
13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의원	서울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18 ● 걱정 유치 수수료율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마친 대전의 한 의료기관입니다. 여러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의뢰받고 있는데, 일부 에이전시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환자를 의뢰받아야 할까요?

### 답 변

- 의료기관은 우선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거래를 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아울러 적법하게 등록한 유치업체와 외국인환자 유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치 업체에 지급하는 유치수수료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걱정 수수료율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걱정 유치 수수료율 상한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 30%)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 외국인환자 걱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6호)

## 19 ●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혜택

(문의 사례) 유치등록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등록 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특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을 받은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전용판매장
  -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 무역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2022.12.부터 추가]

#### ■ 관련법령

-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20 ● 성형·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문의 사례)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으로, 기관 홍보를 위해 다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과는 다른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에 모두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고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 및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의료광고에 대한 특례)
-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21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치등록 필요 여부

(문의 사례) 일본에서 한국 미용·성형 의료기관과 제휴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준비중입니다. (플랫폼 상에서 한국 의료기관-일본인 환자간 상담·예약 진행) 일본에서만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플랫폼도 한국 정부에 요건을 갖추어 유치등록을 해야 하나요?

### 답 변

- 국가의 통치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및 국민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바,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법규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및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헌법 제2조)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만일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이 역외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나 의료해외진출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해외진출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역외적용 불가)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이를 역외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외 에이전시는 의료해외진출법상 '미등록 유치사업자'로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해외에이전시로부터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만일 일본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오로지 일본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할 것이나,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섭외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단지 일본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 22 ● 해외홍보시 진료과목 표기

(문의 사례) 치과 전문의를 보유한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해외에서 외국인대상 양약수술을 홍보하고자 할 때 편의상 ○○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별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것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에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의료광고는 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되어 법적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만일 귀원이 의료광고에 귀원의 명칭을 ‘○○성형외과’라 사용한다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귀원이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 또는 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 동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 동법 제56조의2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3 ●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및 시스템 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

(문의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실적보고 작성 중 사이트 오류로 인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 실적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트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답 변

- 유치실적보고 작성 중 사이트 오류 등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또는 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외국인환자유치기획팀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문의: [medicalkorea@khidi.or.kr](mailto:medicalkorea@khidi.or.kr)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장애문의: [korpmanage@gmail.com](mailto:korpmanage@gmail.com)

※ 출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VI.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

1. 조정 및 중재의 차이점 및 해결방법 | 135
2. 의료분쟁조정 관련 | 137
3.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 142
4.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 143
5.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 완화 원칙 여부) | 145
6. 수술동의서상의 면책 조항 효력 여부 | 147
7. 법률적인 해결 없이 장기화되는 의료분쟁 | 149
8. 환자와 에이전시 간 보증금 관련 갈등 | 150
9.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수수료 관련 갈등 | 151
10. 에이전시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지불 관련 갈등 | 152
11. 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관련 갈등 | 154
12. 외국인환자도 공정한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 155
13. 중복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 157
14.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58
15.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 159
16.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담당의사가 타 병원 근무하는 경우) | 160
17.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의료기관의 명목이 변경된 경우) | 161
18. 수술예약금 환불 관련 | 162
19. 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한 경우) | 168
20.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활용 및 비용 청구 | 169
21. 의료분쟁 발생 시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도  
효력이 있는지 | 170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신청 | 171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수수료 | 173
24. 불법체류자의 의료사고 발생 | 175
25.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조정신청 | 176
26. 외국인환자 진료 거부 | 177
27.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방법 | 179
28. 한국소비자원 MOU 체결 해외기관 목록 | 181
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차이점 | 182
30. 의료분쟁 사례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 | 183
31. 의료분쟁 사례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 184
32. 의료분쟁 사례  
(처방약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185
33. 의료분쟁 사례  
(진료계약 파기시 검사비 환불 여부) | 186
34.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 187
35.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결과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비용 청구) | 188
36. 의료분쟁 사례  
(유방확대수술 후 감염 및 조직 과사) | 189
37. 의료분쟁 사례  
(피부관리 선불 수수료 환불) | 190
38. 의료분쟁 사례  
(안면거상술 이후 신경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 191



## 1 ● 조정 및 중재의 차이점 및 해결방법

(문의 사례)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을 한 유치업체입니다. 아직은 사업초기 단계라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및 의료사고가 없으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의료조정 및 중재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먼저 조정과 중재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 “중재”는 당사자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서, 중재신청은 조정 절차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참고사항 1〉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료분쟁	<p>의료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에 생기는 의사측과 환자측의 다툼</p> <p>- 의료인에게 잘못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p>
의료사고	<p>환자측에서 병원이나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것</p> <p>- 의료과실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포함</p> <p>-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p>

### ○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자체 해결
- 분쟁해결에 관한 사전 합의에 따름
- 분쟁해결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
  - 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신청
  - ②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및 피해구제신청
  - ③ 법원에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 2 ● 의료분쟁조정 관련

(문의 사례) 잘 아는 외국인 한 분이 두 달 전 서울 모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난 직후 목 부분에 수술 전에는 없었던 심각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당시 병원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급한 일정으로 인해 병원 측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일단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제가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측과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배상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만을 주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위 환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 답 변

- 2011년 4월 공포되어 2012년 4월 시행이 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법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의료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예방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 본 건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지원 센터에서 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의 간단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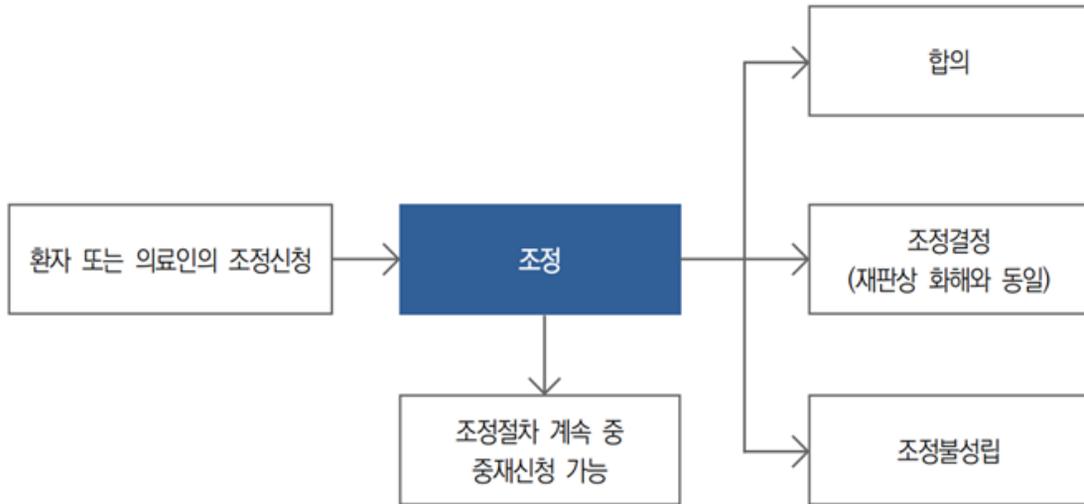
-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
-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
- 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
- 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게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
- 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
- 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 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차.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
- 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 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관련법령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 ◆ 동법 제27조(조정 신청)
-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참고사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 절차

□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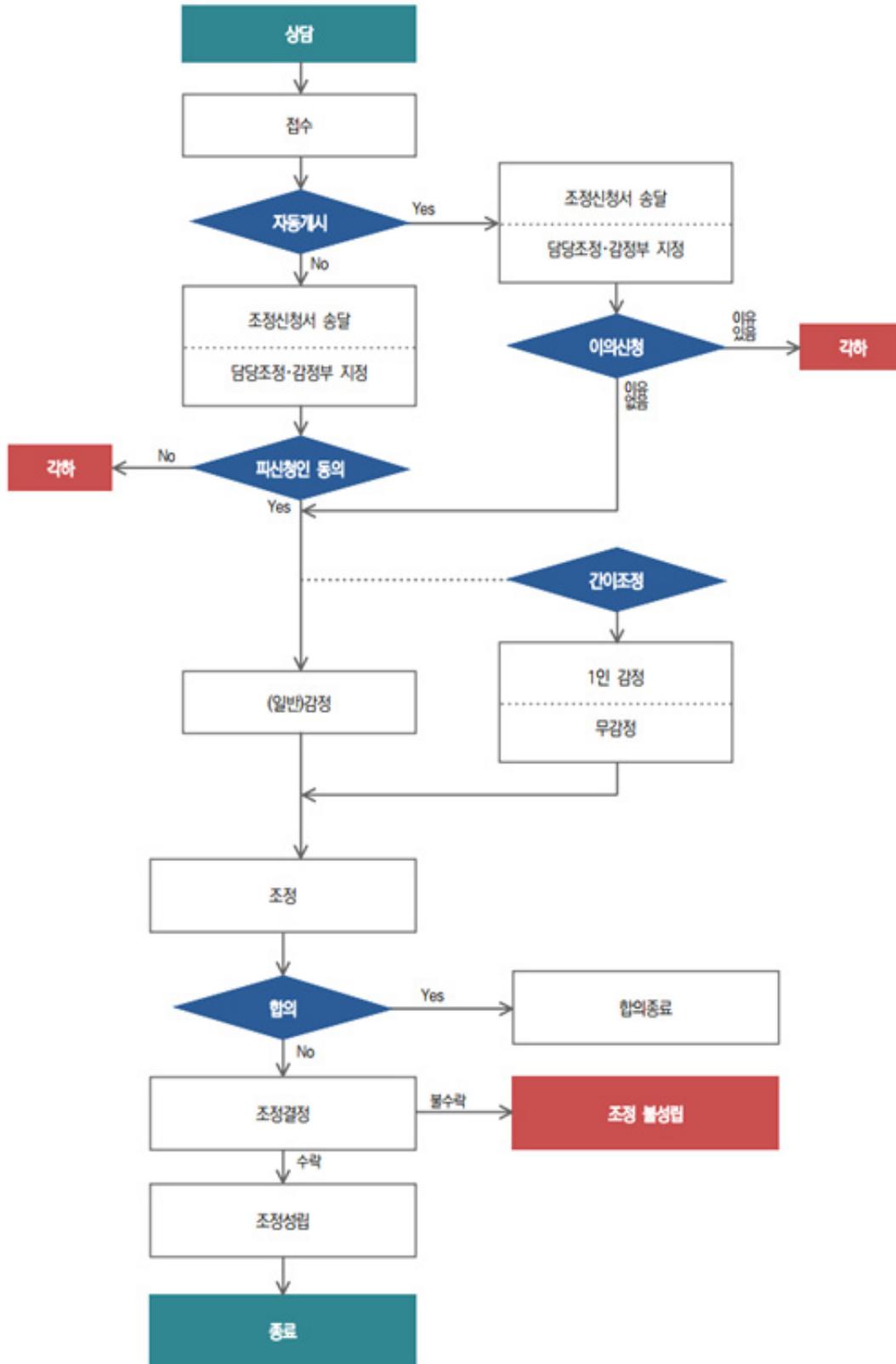
□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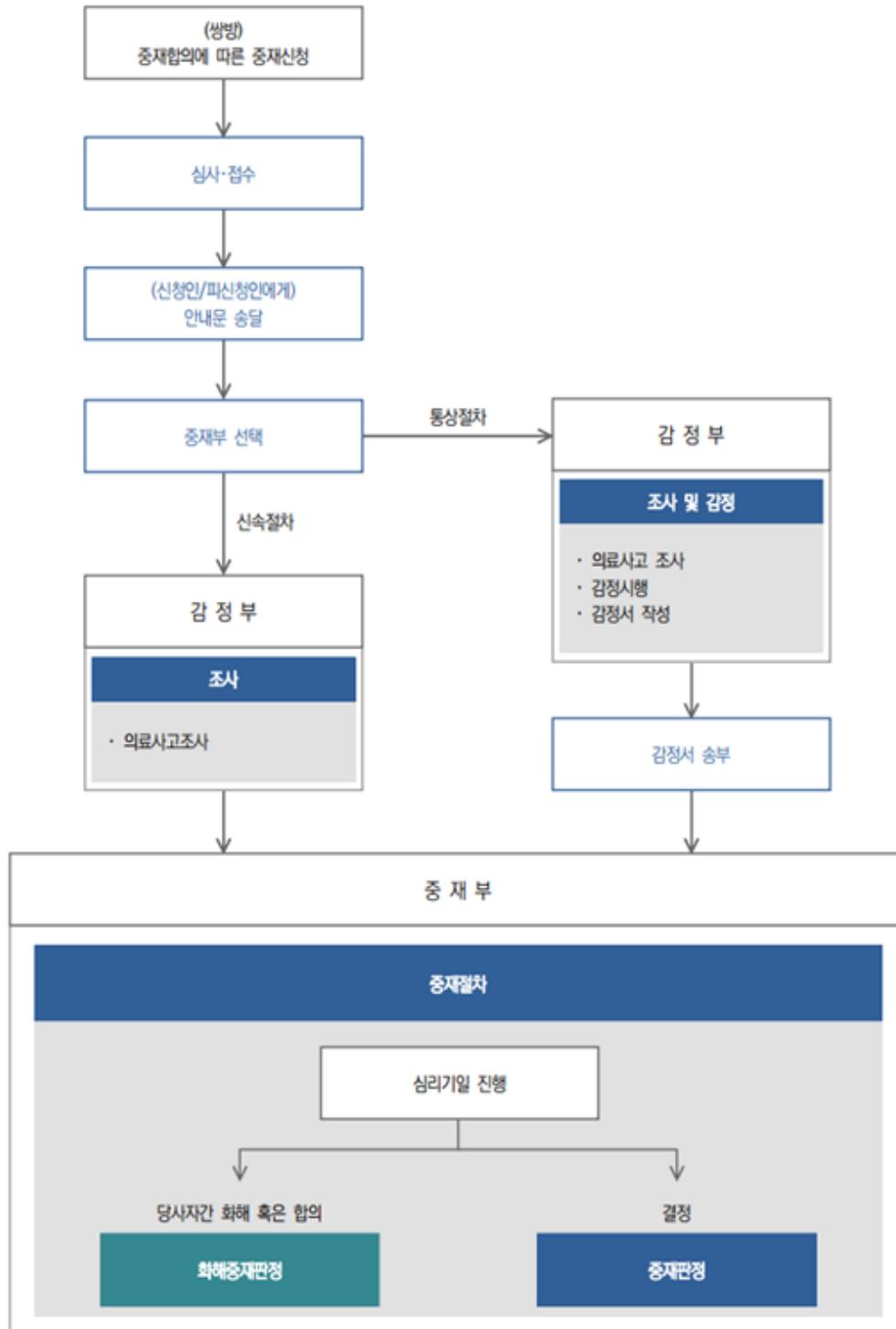
\* 중재합의란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함

※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도소개

□ 조정신청 절차



□ 중재신청 절차



※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신청절차안내

### 3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문의 사례) 평소에 외국인 환자를 비교적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대비 내지 예방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확인·공유해 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외국인 환자는 자신의 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고 의료기관 측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국제재판소를 찾을 수 있나요?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건을 맡아 처리해 줄 변호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선임할 수 있을지도 알려 주십시오.

#### 답 변

-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의 사적인 다툼을 다루는 국제 민사법원과 같은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나 모순된 해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개인 간의 민사분쟁을 다루는 그와 같은 ‘국제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즉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구로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료분쟁의 해결과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만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사자는 개별 합의(재판관할의 합의) 또는 관련 법률(국제사법 등)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당사자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 4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문의 사례) 저는 이마와 턱을 높이고 눈에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모 성형외과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턱과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턱 부위에 삽입된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실리콘 보형물이 구강 내로 일부 돌출되어 큰 불편과 불쾌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의 상태에 관하여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제 나름대로 여러 경로로 알아 본 결과 담당 의사가 수술 과정 그 자체에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와 같이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책임 추궁이 가능할지요?

### 답 변

-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기타 그 밖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의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귀하에게 ‘경우에 따라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로써 귀하는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 동법 제92조(과태료)

## 5

## 입증책임의 완화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 완화 원칙 여부)

(문의 사례) 미국인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 미국인 환자 한 명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결국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형편입니다. 위 미국인 환자는 자신의 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결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재산 대부분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환자는 ‘미국 법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법은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원칙이 존재하는지요?

## 답 변

-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래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과실의 유무 및 내용,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원고(환자)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영역에 속하고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의료 문외한인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입증책임 완화 원칙을 최초로 도입한 1995년의 일명 ‘다한증 사건’은 환자가 다한증 이외에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수술 전의 사전검사에서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한증 수술 중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원고 측이 피고 측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법제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은 원고(환자 측)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법률전문가 법적 검토 자료 (2019)

## 6 ● 수술동의서상의 면책 조항 효력 여부

(문의 사례) 향후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는 주로 중증 질환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환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먼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병원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해당 언어로 기재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게 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희 병원은 동의서의 그와 같은 문구로써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변

-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례를 먼저 소개합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6. 선고 80나3988 판결에서 “원고 3의 보호자인 원고 2가 본건 수술 전에 그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호증(수술 동의서)의 기재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 같은 법원 1983. 5. 13. 선고 82나1384 판결에서는 환자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서약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수술이 급박하지 않았던 점, 의사의 과오로 인하여 부작용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약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집도의사의 위법행위를 미리 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 각 판결에서는 문제된 서약서 내용의 '해석', 즉 당사자가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의도에서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환자와 의사가 의료행위에 앞서서 여하한 경우에도, 즉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그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제출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약서가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서울고등법원 1981. 3. 6. 선고 80나3988, 1983. 5. 13. 선고 82나1384

## 7 ● 법률적인 해결 없이 장기화되는 의료분쟁

(문의 사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몇 달 전 저희 병원에서 모 질병으로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잘못 처방된 약물 때문에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확인과 의료진 토의 등을 통해 위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보아도 치료나 약물 처방에 잘못된 점이 없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미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위 환자는 저희 병원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수십 번 이상 하면서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막연히 손해배상 요구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자 측의 소제기나 그 밖의 법적인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법률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는 없는지요?

### 답 변

- 환자가 진료상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나 불만을 제기 하면서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아무런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주도적으로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취지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료기관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예는 실무상 많지 않으나, 논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책임 유무가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불확정하고 불안한 상태를 하루 빨리 끝내고자 할 경우에 의료기관이 위와 같은 소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법률전문가 법적 검토 자료 (2019)

## 8 환자와 에이전시 간 보증금 관련 갈등

(문의 사례) 저는 몽골에서 온 A라고 합니다. 한국의 B 에이전시를 통해 성형외과를 소개받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B측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퇴원을 하면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했는데도 B측에서는 상황이 어렵다며 보증금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함(민사소송법 제464조)
  -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함(민사조정법)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민사소송법)
  
-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경우,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려우며 사안의 특성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내 체류가능 기간, 변호사선임 가능 여부 등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시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 ■ 관련법령

-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 ◆ 민사조정법

## 9 ●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수수료 관련 갈등

(문의 사례) 저는 서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를 운영 중입니다. 중국에서 온 환자들을 A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몇 달 동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또는 의료기관이 폐업하여 의사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먼저 상담을 의뢰하시면 진흥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 파악을 하게 되며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수수료 지급을 구두로 요청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에이전시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절차의 유형과 특성에 관하여는 「환자 에이전시 간 보증금 갈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 ◆ 민사조정법

## 10 ● 에이전시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지불 관련 갈등

(문의 사례)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 이번에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약금 일부를 먼저 받았기에 치료를 진행 하였으나 나머지 잔액건에 대해서는 입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에이전시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송금을 했다는 답변만 하실뿐 저희 병원 측에서는 입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변

- 진료비 지불채무는 일반적인 진료계약에 따라 외국인환자가 의료기관에게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만일 귀원이 해외 에이전시와 해당 외국인환자의 진료비 대납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귀원은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외국인환자가 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절차(소송, 조정 등)를 거쳐야 하는바, 이 경우 분쟁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상되는 총진료비 전액을 예치받은 후 치료경과에 따라 기 발생된 치료비 상당액을 순차적으로 예치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방안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 진행 절차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중재판정 (화해판정)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 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신청 가능	- 대한상사중재에 중재신청서 제출 - 중재비용예납 -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중재합의 또는 신청액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해당 분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 증거조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통상 2~4회	중재인의 중재판정(당사자의 합의 시 화해판정) -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 11 환자과 의료기관 간 진료비 관련 갈등

(문의 사례) 저는 중국에서 온 환자입니다. 명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의료기관 측이 사전 설명 없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였습니다. 과도하게 청구된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환자가 지급해야 할 진료비는 상호 약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이 사전에 약속한 것과 달리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있었고 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추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에 따라 변경된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상호 합의(묵시적 합의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환자는 해당 합의의 범위 내에서 추가진료비를 지급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법률전문가 법적 검토 자료 (2019)

## 12 ● 외국인환자도 공정한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사례) 저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성형외과 기술은 평소 방송과 지인들을 통해 익히 들은바 있어 중국 현지보다 비싼 금액임에도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한국으로 건너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극도의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인으로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한국 내 조정·중재기구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인 제가 한국인 의료인에게 편향되지 않은 공정하고 공평한 조정·중재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되어 꺼려집니다. 과연 외국인 환자인 저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공정한 조정·중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따라서 외국인환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조정·중재신청하고 일정한 조정·중재 절차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홈페이지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권 사용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의료사고 감정단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단체 1인 및 법조인 2인, 보건의료인 1인, 소비자단체 1인, 대학교수 1인으로 각 구성되므로 의료인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조정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의학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

통념적, 조화로운 사고를 통한 환자와 의료인 양측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적용대상)
- ◆ 동법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감정부)

## 13 ● 중복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사례) 저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입니다. 성형수술 이후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구나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한국인 지인으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현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늦게 의료분쟁해결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곳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 변

- 모든 조정신청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자체가 이유 없다 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본 사안은 이미 별도의 독립된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위 각하사유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바,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 14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의 사례) 오래전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일상생활조차 힘듭니다. 당시에는 형편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의료사고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 답 변

#### ○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민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중 이른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의료사고에 의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상) 하는데 필요한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7년입니다.

#### ■ 관련법령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 동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15 ●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문의 사례) 중국인 여성이 2년 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세 차례로 진행되는 시술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얼마 전 마지막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 및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답 변

- 의료기관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를 상대로 폐업으로 인해 진료 받지 못한 진료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폐업 신고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 기록부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폐업으로 의료기관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진료비 환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진료비 환불에 관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 ◆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16 ●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담당의사가 타 병원 근무하는 경우)

(문의 사례) 중국인 환자가 성형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시 한국을 찾아 해당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은 이미 폐업하고, 수술 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받는다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서에는 1년 이내 A/S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경우)

### 답 변

-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만일 해당 문제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집도의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만일 해당 문제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A/S 대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재수술 비용에 관한 책임은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 ■ 관련법령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동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17 ●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의료기관의 명의를 변경된 경우)

(문의 사례) 의료기관이 진료비 또는 수술비 선불을 받고 진료 또는 수술 취소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해당 의료기관은 그대로 있는데 (병원 대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뀐 상황) 당시 담당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진료(근무) 하지 않는 경우 수술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의료기관이 진료비 또는 수술비를 선불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반환해야할 법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비록 의료기관의 상호가 동일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한 문제는 종래 대표자였던 의료인과 조율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 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기로 한 중요한 이유가 특정 의료인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점에 이르러 해당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면, 환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진료위임계약을 취소하고 진료비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8 ● 수술예약금 환불 관련

(문의 사례) 중국인 여성이 서울의 A성형외과의 상담실장과 상담(의사와의 상담은 없음)후 수술예약금을 지불하고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 전날에 수술 연기 또는 취소를 원한다고 했는데 수술 날짜 변경은 불가능하고 수술 취소 시에는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술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 환자가 수술을 예약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민법상 계약금으로 해석되는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만일 수술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술 예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계약금(수술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의료기관이 해당 금원을 환불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예약금 환불에 관한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사적인 분쟁해결의 실무적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상 성형수술 예약취소에 따른 분쟁에 관하여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 1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계약금의 20%의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민법 제565조(계약금)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일부개정]

〈별표 1〉

대 상 품 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 당 품 목
∴	∴	∴	
39	의료업	○ 임플란트	
		○ 성형수술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	∴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39. 의료업(3개 업종)

임 플 란 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시술 후 1년까지 2) 시술 1년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검진(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li> <li>○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li> <li>○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li> <li>○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li> </ul>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성형수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계약금의 90% 환급 ○ 계약금의 50% 환급 ○ 계약금의 20%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 전 이전까지의 해제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치료 개시 이전 - 치료 개시 이후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치료 개시 이전 - 치료 개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li> <li>○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li> <li>○ 계약금의 10% 배상</li> <li>○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li> <li>* 다만 계약금이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 기준 계약금은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함.</li> </ul>

## 19 ● 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한 경우)

(문의 사례)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의 한 성형외과에 예약금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예약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예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수술 3일전까지는 일부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환자가 수술을 예약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민법상 계약금으로 해석되는데,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만일 수술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술 예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계약금(수술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면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원을 환불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예약금 환불에 관한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사적인 분쟁해결의 실무적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범위에 관하여는 위 「(17)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민법 제565조(계약금)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 ●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활용 및 비용 청구

(문의 사례) 서울 소재 의원급 성형외과입니다.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입원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제휴된 숙박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환자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숙박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답 변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동조 단서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만일 귀원이 의료기관 외부 숙박시설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이에 따른 입원비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을 실시한 것으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33조(개설)
- ◆ 의료법 제90조(벌칙)

## 21 ● 의료분쟁 발생 시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도 효력이 있는지

(문의 사례) 2년 전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현재 수술 받은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일본 대학병원에서 2년 전 받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수술의 부작용이라는 명백한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말처럼 자국에서 받은 진단서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 변

- 의료분쟁에 따른 입증방법으로서 국내 진단서와 해외 진단서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분쟁의료기관이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수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아울러 의료소송이 진행될 경우, 진단서만으로 의료상의 과실 또는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이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의료소송 절차에서 높은 증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 ◆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 2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신청

(문의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답 변

- 2012년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의료분쟁과 관련된 무료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은 일반 상담과 전문 상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전화상담】

☎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

☎ 이용 시간: 매주 월~금 09:00~12:00, 13:00~18:00

#### 【온라인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상시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상담내용을 검토하여 익일(공휴일에는 그 익일)까지 답변하여 드립니다.

#### 【온라인 법률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해결절차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의료중재원 소속 심사관에 의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방문하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으며 방문 전 전화 연락을 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층

### 【우편·팩스상담】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작성은 자유형식이나 육하원칙에 의거한 상세 분쟁내용을 포함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팀(팩스번호: 02-6210-0099)

### 【일일상담】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선착순 사전예약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정 및 장소: 해당 상담일자 도래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http://www.k-medi.or.kr)) (의료분쟁무료상담/상담업무 소개)

(문의 사례) 한국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하려고 했더니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지만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와 전문적인 감정 및 조정을 통한 높은 퀄리티의 분쟁해결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조정·중재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기초적 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 ○ 조정·중재 수수료

조정·중재 신청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장애인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면제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 첨부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원본

## ○ 수수료 예시

조정·중재 신청금액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수수료	22,000	22,000	32,000	112,000	162,000	362,000

## ○ 수수료 환급

환급사유	환금액(범위)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납부수수료 전액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납부수수료 전액
신청 각하에 해당하는 건 중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한 경우	환급하지 않음
신청 취하 건	납부수수료의 1/2

※ 법 제27조 제7항에 의해 신청된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점거, 기물 파괴 또는 손상, 업무방해 등이 해당)
-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안내)

### ■ 관련법령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 24 ● 불법체류자의 의료사고 발생

(문의 사례) 저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한국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자격으로도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그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따라서 외국인환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중재의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는 아니합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홈페이지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권 사용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조정·중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정·중재 신청 시 필수적인 제출서류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조정·중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영상물(MRI, X-ray등), 진료비 영수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 25 ●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조정신청

(문의 사례)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하나요?

### 답 변

-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신청서는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연관된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됩니다.

※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의료분쟁무료상담/자주 찾는 질문)

## 26 ● 외국인환자 진료 거부

(문의 사례)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화상치료를 위해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 현재는 외국인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 변

-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의료법 제89조(벌칙) 에 따르면, 모든 진료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진료 거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조항에 ‘정당한 사유’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로 든 상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어 진료받으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 따라서, 우선 병원측에 정확한 사유를 상세히 물어보신 후 문의하신 병원의 진료 거부 사유가 위 사항들에 부합이 되는 경우 적법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법적 제재가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등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우발적 초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외국인환자 진료를 실시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는바,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등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등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환자 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면 해당 진료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 동법 제89조(벌칙)
- ◆ 동법 제66조(자격정지 등)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27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방법

(문의 사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 ○ 분쟁조정이란?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 절차 안내

-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 ○ 분쟁조정 절차도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 신청/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 28 ● 한국소비자원 MOU 체결 해외기관 목록

(문의 사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싱가포르로 귀국을 하였으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 알아보던 중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한 절차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043-880-5400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상담시간: 평일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 상담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영어 사용자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이용하시고, 한국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http://www.kca.go.kr))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http://www.kca.go.kr))>피해구제>상담신청

## 29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차이점

(문의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모두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 변

####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교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절차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지원	상담-감정부조사-조정부조정
수수료	수수료 없음	조정·중재 신청시 수수료 발생
처리대상	의료사고 발생 후 10년 이내 사건 진료비 포함	2012. 4. 8.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진료비 불포함
강제성	의료기관 조정절차 거부 불가능	의료기관 조정절차 거부 가능 (단,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외)

○ 한국 중재원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조정 및 신청이 가능하며, 진료비 및 예약금 환불 등의 문의일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연결하시길 요청드립니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www.kca.go.kr](http://www.kca.go.kr)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www.k-medi.or.kr](http://www.k-medi.or.kr)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http://www.kca.go.kr)) 피해구제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http://www.k-medi.or.kr)) 제도안내

### 30 ● 의료분쟁 사례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

(문의 사례)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 4회의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색소침착의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단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거나 또는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1 ● 의료분쟁 사례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문의 사례) 30대 가정주부로 수술 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염증으로 인해 고어텍스를 제거하였으므로 현재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담당 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을 삽입한 후 인체 조직 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염증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시술상의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체질적 소인에 의한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만일 성형수술 전 부작용(염증) 및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2 ● 의료분쟁 사례 (처방약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문의 사례) 53세 남자인데, 최근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근에 복용 중인 약이 없는지 물었고 6년간 피부과 의원에서 피부건조증으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을 자주 복용했다고 하였더니,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이 스테로이드계열의 약제이고 이것 때문에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이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답 변

- 스테로이드는 항염증과 면역억제 작용에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생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려우며(비가역적 손상),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바, 피부건조증으로 스테로이드의 장기투여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 실제 스테로이드가 투여된 정도, 투여방법에 대한 개별적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리 평가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3 ● 의료분쟁 사례 (진료계약 파기시 검사비 환불 여부)

(문의 사례)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수술 예정 1주일 전에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검사비를 제외하고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를 내야 합니까?

#### 답 변

- 환자가 수술을 예약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민법상 계약금으로 해석되는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만일 수술예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술 예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계약금(수술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의료기관이 해당 금원을 환불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예약금 환불에 관한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사적인 분쟁해결의 실무적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범위에 관하여는 위 「(17)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4 ●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문의 사례) 43세 여성으로 오래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쌍꺼풀 라인이 커서 성형외과에서 다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말을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토안이 되어 눈이 감기질 않아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겼고, 밤에는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시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였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쌍꺼풀 재수술일 경우 토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토안 자체는 벨현상이라는 눈의 생리학적 방어기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구건조증, 각막염 등 증상 발현 시에 치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특히,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5 ● 의료분쟁 사례 (쌍꺼풀 수술 결과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문의 사례) 30대 여성으로 성형외과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라인이 너무 커서 극히 불량한 외모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재수술까지 받았는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배제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결과가 예정된 채 시행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 및 긴급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객관화되지 않은 경우 병원은 재수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6 ● 의료분쟁 사례 (유방확대수술 후 감염 및 조직 괴사)

(문의 사례) 5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후 MRSA(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약 15개월간 항생제 투여를 받고, 괴사 조직 제거술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었고, 피부결함도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MRSA균 검출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적절하였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염증이 진행된 것이므로 보형물 제거가 필요했던 경우로 사료됩니다. 감염에 따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감염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고생한 부분과 피부결함이 남게 되는데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7 ● 의료분쟁 사례 (피부관리 선불 수수료 환급)

(문의 사례)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 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 답 변

- 귀하는 해당 피부관리매장 사업자와 10회의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고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잔여대금 환급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예약금 환불에 관한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사적인 분쟁해결의 실무적 판단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38 ● 의료분쟁 사례 (안면거상술 이후 신경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사례)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증상 발생사실이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되고, 수술 이외에 안면 신경 마비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며, 본 건 수술과정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의 발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보건/의료)

# VII.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불법 브로커 신고 관련

1. 불법 브로커 개념 안내 | 195
2. 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 | 196
3. 불법유치행위 등 신고포상금제 | 198
4. 미등록 유치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 201
5. 불법 유치행위 신고시 익명성 보장 불가 | 202
6. 불법 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 203



## 1 ● 불법 브로커 개념 안내

(문의 사례) 저는 부산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를 운영 중입니다. 주변에 많은 에이전시들이 있는데, 에이전시별로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브로커가 아닌지, 또한 불법 브로커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에이전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에이전시는 유치사업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각 지자체에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에이전시들이 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한 불법 브로커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만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적정수수료율 또는 과도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호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한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적정 수수료율을 합의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과도한 수수료 요구·지급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26호 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

## 2 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

(문의 사례)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 변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서는 불법유치행위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시 불법유치행위 등의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수사 입증자료 등에 대해 안내).

#### 1.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www.kmediwatch.kr](http://www.kmediwatch.kr))

- 신고(접수)
  - 온라인 상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 시, “신고센터” 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에서 신고서를 작성(위반 유형 선택 및 신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후 증빙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조사처리
  - 관련 법규를 토대로 신고 된 내용이 위반사항인지를 판단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정보(증빙자료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회신(처리완료)
  - 조사를 통해 처리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조회하기”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주요 위반사례로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 조사 결과, ‘위반 의심’으로 확정된 신고는 피신고기관의 소관 지자체로 이관되며, 이후의 후속조치(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2. 본인의 거주지 확인후 관할경찰서에 직접 신고

- 관할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신고인과 상담을 거쳐 수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신고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 및 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신고자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입증자료(혐의자의 인적사항, 불법 유치 행위 입증)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수사 입증자료 요건

- (필수자료) 제보자의 진술서, 혐의자의 인적사항(성명,연령,사업자등록증,연락처,SNS계정 등),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여부 등
- 진료예약확인서 및 실제 입국한 외국인환자 명단(여권),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및 수술 후기 게시물 등의 자료 확보 시 신속한 수사 가능
- (실명진술 가능시) 혐의자와 교신한 SNS, 대화내용 내역

- 「지방일괄이양법」(2021.1.1. 시행)에 따라 등록관리, 실적관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 일체는 시·도지사 관할로 이양된 업무이며, 불법유치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처분 등은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2021. 1. 1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출처: 외국인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www,kmediwatch.kr)

### 3 불법유치행위 등 신고포상금제

(문의 사례) 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16.6.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동법 제27조는 불법유치행위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신고 및 고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li> <li>•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li> <li>•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의료해외진출법 제7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동법 제9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동법 제15조)에 위반한 자</li> </ul>
포상금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	<p>(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1호 2022.10.31)”에 근거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음</li> </ul> <p>(지급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li> <li>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li> <li>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li> </ol> </li> <li>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li> <li>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li> <li>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li> </ol>

[별표 1]

〈 포상금의 지급기준 〉

부정행위	포상기준	비고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집행 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3.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4. 기소유예	1십만원으로 한다.	

■ 관련법령

-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4 미등록 유치행위 신고시 유의사항

(문의 사례) 저는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후 유치활동 중인 유치업체 대표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치행위를 하는 자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럴 때 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 등록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갖춘 합법적인 업체의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만약, 미등록 유치행위자들을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한지요? 또한 신고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 답 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8조는 미등록 유치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는 과징금 부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제27조는 미등록 유치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자 대상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로 전제로 합니다.
- 다만, 이러한 미등록 유치행위자(피신고자)에 대한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피신고자의 혐의 입증은 전제로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가 피신고자 관련 정보 및 피신고자의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신고함이 신속한 수사 개시 및 처리에 도움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령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동법 제26조(과징금)
- ◆ 동법 제27조(신고자포상)
- ◆ 동법 제28조(벌칙)
- ◆ 동법 시행령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 5 불법 유치행위 신고시 익명성 보장 불가

(문의 사례) 거짓정보를 제공한 병원을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로 신고하고 싶은 유치등록 의료 기관입니다. 해당 불법 행위 신고 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할까요?

### 답 변

- 거짓정보 제공이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 중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등록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아님에도 인증마크(KAHF)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경쟁사 업무방해 목적의 신고 등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및 신고·접수 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사결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 신원 확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신고시 신고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지방일괄이양법」(2021.1.1. 시행)에 따라 등록관리, 실적관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 일체는 시·도지사 관할로 이양된 업무이며, 불법유치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처분 등은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로써 이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 관련법령

- ◆ 거짓정보 제공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 ◆ 동법 시행령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 ◆ 「지방일괄이양법」(2021.1.1 시행)

## 6 불법 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문의 사례) 사전 동의 없이 시술(수술) 후기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 외국인입니다.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불법 유치행위 신고 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핸드폰 번호가 없는 상황인데 본인인증 없이 해당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경쟁사 업무방해 목적의 신고를 최소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 신원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현재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는 핸드폰 본인 인증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신고가 용이하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 중입니다.
- 현재는 휴대 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출처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https://www.kmediwatch.kr/>)

# VIII.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1.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안내 | 207
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진료 항목 안내 | 208
3.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안내 | 209
4.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외국통화 | 210
5.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 211
6.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경우 | 213
7. 성형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215
8. 출국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216
9. 지불수단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 217
10. 부가가치세 가맹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환급 의무 | 218
1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219
12.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공항) | 220
13.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도심) | 223
14. 유치업체가 진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225
15.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율 | 226
16. 부가가치세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 | 227



## 1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안내

(문의 사례) 저는 한국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진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 변

- 한국에서는 미용성형시술(또는 수술)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하지만 한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다음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시·도지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둘째, 국세청 지정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등 필요 장비를 의료기관 내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관광객들이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진료 전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내부에 비치된 표찰 또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에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http://www.medicalkorea.or.kr))에 방문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의 범위)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1(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진료 항목 안내

(문의 사례) 저는 선천적으로 코 기형이 있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답 변

- 문의하신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재건수술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다 할 것입니다.
-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시(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진료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이어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를 받으시고자 하는 항목이 환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환급 대상 의료서비스 범위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 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 관련법령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3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안내

(문의 사례) 강남의 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고 2주 후에 출국할 예정인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기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진료 당일에 여권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 후, **진료비 결제와 함께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신 환급전표를 잘 보관하셨다가 출국 당일에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에 위치한 환급창구에 환급전표를 여권과 함께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결제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별로 환급 가능 여부는 차이가 있으니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환급 가능한 곳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진료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 ◆ 동 특례규정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제5조(환급장소)

## 4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외국통화

(문의 사례) 부가가치세 환급시 외국통화로도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르면,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 중에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신용카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하여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 「의료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5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문의 사례)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교포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용역에 포함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도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답 변

-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대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시, 환자의 여권 정보 및 항공권(3개월 이내 출국 여부)확인

#### <환급 불가 외국인 관광객>

- ◆ 국내 주재 외교관, 외국 공관원, 국제연합군, 미군 장병 및 군무원
- ◆ 대한민국 국민 중
  -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 중인 자
  - 비거주였던 자로 입국 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 외국인 중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중인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여 외국인 등록한 경우 → 유치 불가, 환급 가능

#### <환급 가능 외국인 관광객>

- ◆ 대한민국 국민 중
  - 외국에서 영업활동 종사 중인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 외국인 중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더라도 국내 주소를 두지 않고 해외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3개월 이내 출국 등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6 ●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경우

(문의 사례)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환급전표를 요청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변

- 일단 진료를 받으신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은 곳에 한하며,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다음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시·도지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둘째, 국세청 지정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등 필요 장비를 의료기관 내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한편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아직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가맹계약 및 단말기 설치 등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가맹 계약이 진행된다면, 환자분께서는 출국 전에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시어 환급전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기관과 갈등이 있으실 경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7 ● 성형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의 사례) 중국인 환자가 쌍꺼풀 재수술을 하기 위해 같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였고, 재수술 비용 또한 첫 수술비용과 동일하게 지불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측에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재수술이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수술이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 답 변

- 미용을 목적으로 한 재수술일 경우 미용·성형 부가치세 환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쌍꺼풀 수술에 대한 부작용 및 치료 목적의 재수술인 경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시(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진료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이어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1(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8 출국 후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문의 사례) 성형 수술 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고 이미 출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 변

- 현행법상 외국인관광객이 이미 출국을 완료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다만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국항에 설치된 수거함에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을 투입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환급장소)

## 9

## 지불수단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문의 사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료비를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불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에 따르면,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료용역공급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에는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10 부가가치세 가맹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환급 의무

(문의 사례) 얼마전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으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부가세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 환자의 부가세 환급을 거부할 수 없는지요? 법적으로 반드시 부가세 환급 전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지, 환급을 거부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에 따르면,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료용역 공급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에는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11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문의 사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총 7곳(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인사이트/엑심베이, 나이스정보통신, 석세스모드, 큐브리펀드, 한국정보통신, 로드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시, 수술을 받은 병원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와 관련 없이 어느 곳에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3에 따라,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외국인 환자가 다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전에 국세청에서 지정되고, 해당 의료기관과 환급을 위한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의료기관에 단말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곳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수술을 받으신 의료기관과 가맹계약체결이 되어있지 않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 12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 (공항)

(문의 사례) 인천공항 T1 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내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 위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인천공항 T1의 경우는, 3층에 면세지역 Tax Refund Zone(Gate 28 인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급창구에는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평일·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7:00~19:00 까지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바랍니다.
- 인천공항 T2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창구는 현재 출국층(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급창구는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평일·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07:15~21:15 까지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 바랍니다. 24시간 운영 되는 무인창구(KIOSK)는 3층(Gate 249)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운영이나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고, 운영 시간 등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사업자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1577-2600, 담당부서: 상업서비스팀)

※ 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출발>출국절차>부과세환급

## ○ 인천공항 창구 이용 부가세환급 안내

창구 이용 부가세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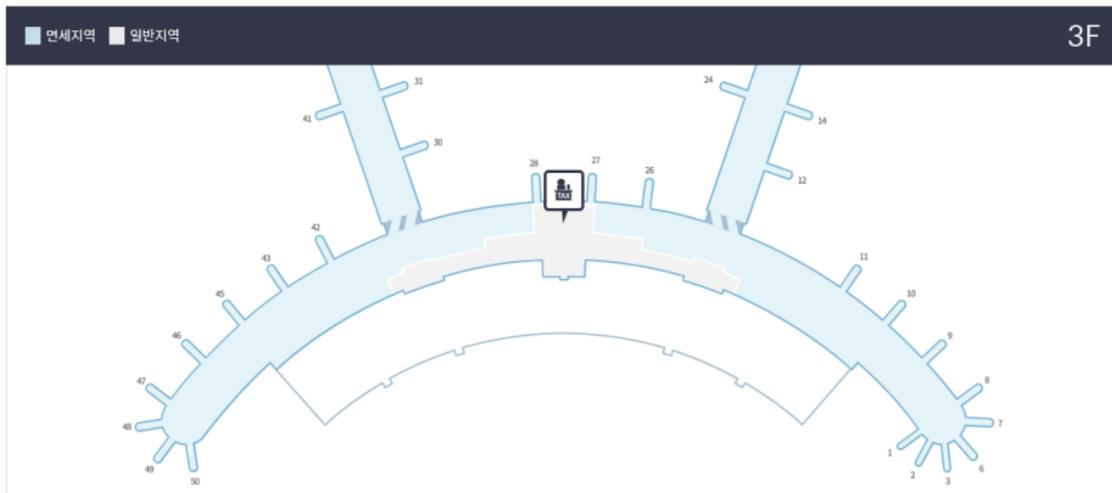
### 제 1여객터미널(한국정보통신)

이용시간	07:00 ~ 19:00
연락처	032) 743-1009
위치	제1여객터미널 면세지역 3층 28번 게이트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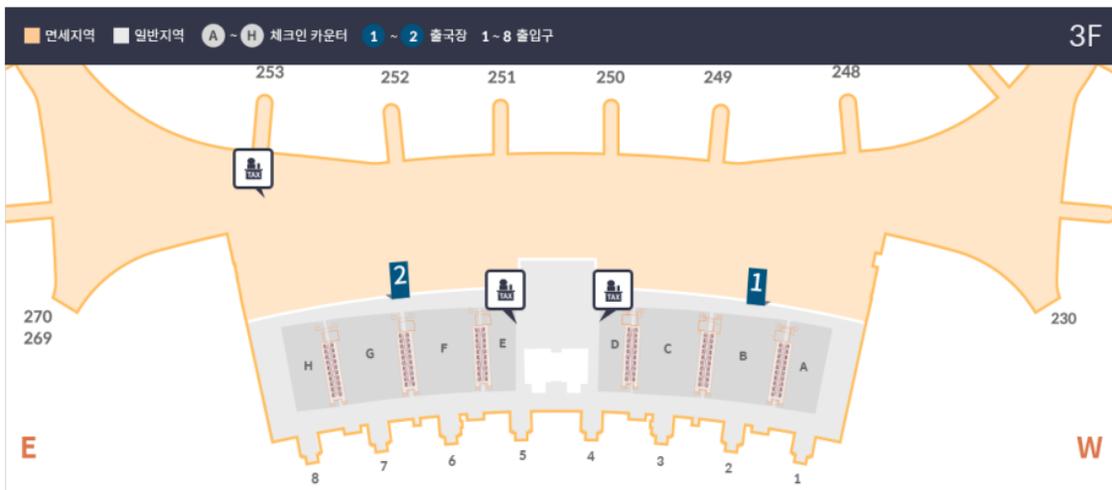
### 제 2여객터미널(나이스정보통신)

이용시간	07:00 ~ 21:00
연락처	032) 743-0647
위치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D, E 체크인카운터 부근, 면세지역 3층 253번 게이트 부근

### 제 1여객터미널(한국정보통신)



### 제 2여객터미널(나이스정보통신)



## ○ 인천공항 자동화기기 이용 부가세환급 안내

### 자동화기기 이용 부가세환급

- 자동화기기에 여권을 인식하면 이미 승인된 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 환급액이 크거나 현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 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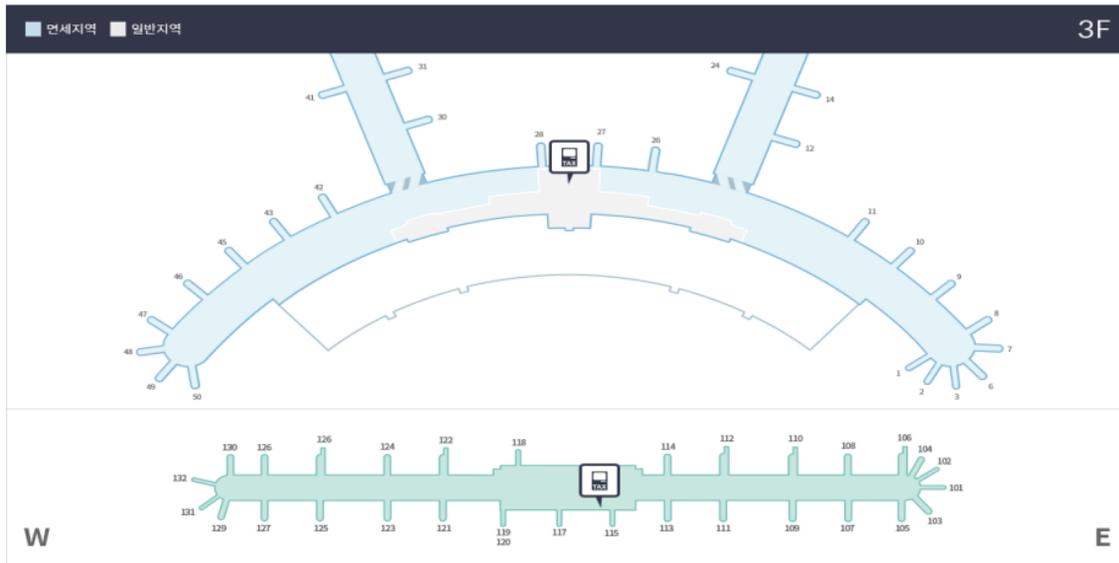
#### 제 1여객터미널(한국정보통신)

이용시간	24시간
연락처	032) 743-1009
위치	1여객터미널 면세지역 3층 28번 게이트 부근, 탑승동 3층 중앙 약국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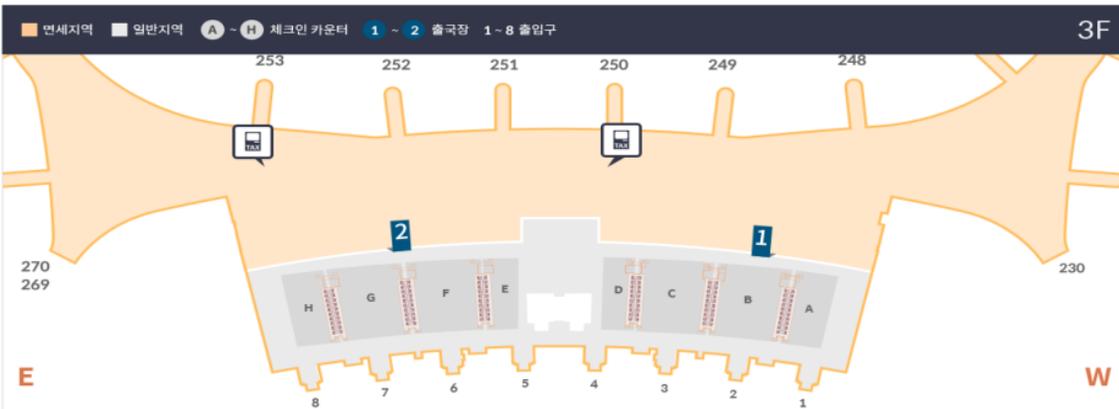
#### 제 2여객터미널(나이스정보통신)

이용시간	24시간
연락처	032) 743-0647
위치	제2여객터미널 면세지역 3층 250, 253번 게이트 부근

#### 제 1여객터미널(한국정보통신)



#### 제 2여객터미널(나이스정보통신)



### 13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위치 (도심)

(문의 사례) 부가가치세 가맹 의료기관 방문 후 도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도심에서 환급 가능한 청구 위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500만원 이하의 환급전표 소지시 시내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일자 확인이 요구됩니다.
- 또한 시내에서 현금 환급시 신용카드 담보금이 필요하며(VISA, MASTER, JCB, AMEX). 환급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2주~ 3주 정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운영이나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고, 운영 시간 등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사업자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지정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글로벌 텍스프리(전화 02-518-0837, gtf@global-taxfree.com)
  - 큐브 리펀드(전화 02-6925-2033, cube@cuberefund.com)

<https://www.cuberefund.com/ux/main.do>

○ 도심창구 이용 부가세환급 안내 (글로벌텍스프리 도심창구 위치)

주요시내환급창구

지역	데스크명	운영시간	주소
명동	롯데백화점본점	10:30~2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1층
	신세계백화점본점	10:30~2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 본관, B1층
강남	현대백화점 본점	10:30~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29, 5층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10:30~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5층
	갤러리아명품관 압구정	10:30~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3, WEST 5F
	신세계백화점 강남	10:30~2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2층

○ 도심창구 이용 부가세환급 안내 (큐브 리펀드 도심창구 위치 )



※ 출처 : 글로벌 텍스프리(<https://www.global-taxfree.com/#1>)  
 큐브 리펀드(<https://www.cuberefund.com/ux/main.do>)

## 14 ● 유치업체가 진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문의 사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업체를 통해 모든 경비 및 진료비를 지불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또한 진료비에 에이전시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하위 법령은 외국인 환자가 유치업체에 비용 지불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한편, 외국인 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에이전시의 수수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5 ●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율

(문의 사례)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중국인입니다.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2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높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 답 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일부 의료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6 부가가치세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

(문의 사례)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에 방문 예정인 중국인입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모든 병원에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답 변

-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는 경우, 가맹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메뉴에서 부가세 환급 가능한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메디컬 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는 경우 가맹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 화면]

## Cosmetic Surgery Tax Refund

### What is the value-added tax(VAT) refund?

- At the tax refund-affiliated clinics or hospitals in Korea,
- Foreign tourists, who have received cosmetic plastic surgery worth at least KRW 30,000,
- Can get a value-added tax(VAT) refund before they leave Korea.

•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Statistical yearbook, 2018

• Available Medical Institution List for Cosmetic Surgery Tax Refund

[Download](#)

※ 출처 : 메디컬 코리아(<https://www.medicalkorea.or.kr/en/index>)

Useful Info → Cosmetic Surgery Tax Refund → Available Medical Institution List

# IV.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메디컬코리아센터 소개

1.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제공 서비스 | 231
2.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232
3.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제공 서비스 | 233
4.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234
5. 메디컬코리아 챗봇 서비스 운영 | 235



## 1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제공 서비스

(문의 사례)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답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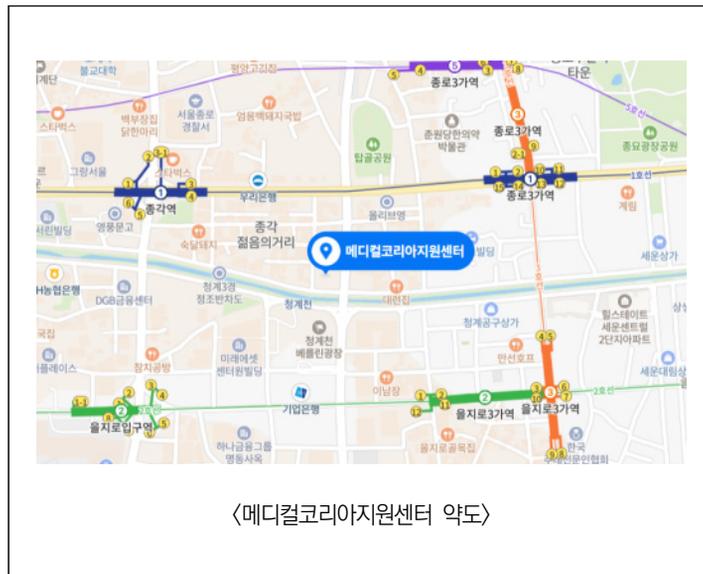
- 서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로 이용함에 있어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나 불편·불만사항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분들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서 유치등록 의료기관 정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불법유치행위 신고 절차 안내, 의료분쟁 해결 관련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명드리면,
  - 의료서비스 이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 다국어 의료통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전문통역사 연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 외국인환자 불편 사항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기관 이용 불편사항 상담, 의료불만 분쟁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 불법브로커 및 불법유치행위 관련 1차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시, 서울관광재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문의 사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의료기관과 의료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싶은데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운영시간: 09:00~18:00 (365일 연중무휴)
- 상담방법: 메디컬콜(1577-7129) 또는 방문상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상담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medicalkorea.or.kr>)
- 위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5, 삼일빌딩 1층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종각역 4번 출구에서 436m)



### 3 ●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제공 서비스

(문의 사례) 한국을 방문 예정인 관광객입니다. 이번 관광 일정 중 시간을 내어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데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 예정인데 공항 내 의료관광안내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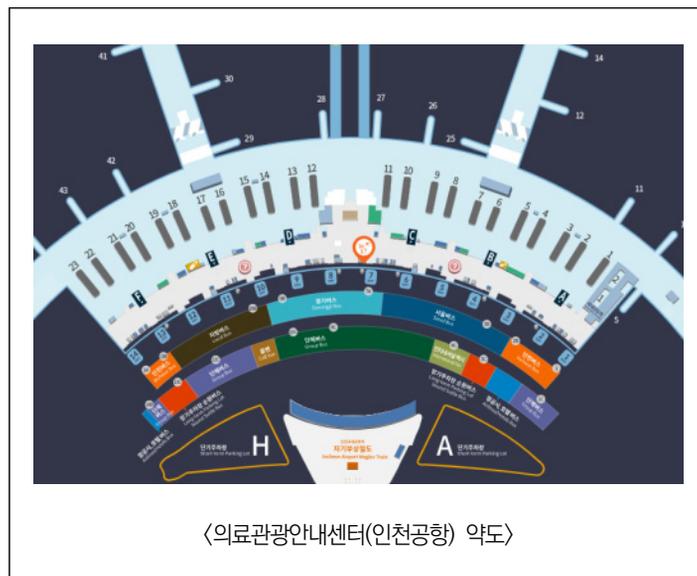
- 인천공항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 서비스 및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 의료이용·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 및 상담사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진료 예약부터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 주변 음식점 및 숙박 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안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피부 측정 테스트, 스트레스 측정 테스트,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4 ●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문의 사례) 성형 수술을 위해 한국 방문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 할 예정인데 공항 내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위치 및 지원 언어를 알 수 있을까요?

#### 답 변

- 운영시간: 09:00~21:00 (365일 연중무휴)
- 상담방법: 메디컬콜(032-743-3506, 3507) 또는 방문상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상담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medicalkorea.or.kr>)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1층 7번출구 옆



<의료관광안내센터(인천공항) 약도>

## 5 ● 메디컬코리아 챗봇 서비스 운영

(문의 사례)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입니다.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사항을 간결하게 보고싶는데 지원센터 운영시간과 시차가 맞지 않아 전화 문의가 어렵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 답 변

- 현재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통해 한국 의료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분쟁, 불법 유치 행위 관련 안내 등을 다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지원되어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진료 예약부터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medicalkorea.or.kr/en/index>)

# 부록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Counseling practice for foreign patients in 2023

## 관련 법령 및 고시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239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2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0
4.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68
5.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 272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응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273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98호, 2023.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 제2장 관리·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 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 12. 21.>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 12. 21.>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 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 제3장 지원 및 육성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절차·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2. 21.>
-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 12. 21.>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 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2018. 9. 18., 2021. 12. 21.>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 ②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 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 제4장 운영체계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기반 조성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공공기관의 장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2021. 12. 21.>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등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등 업무

5. 제17조제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1조제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1.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2조의2(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제26조(과징금)**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2023. 3. 28.>

## 부 칙 <제1359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포함한다)·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을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5540호, 2018. 3. 27.>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생략

## 부 칙 <제15777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5894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672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 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7007호, 2020. 2. 18.>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 부 칙 <제18622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9298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8호, 2022. 12.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3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삭제 <2022. 12. 20.>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 체결일부 45일 이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2. 12.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2022. 12. 20.〉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 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0.〉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12. 20.]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0.>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2022. 12. 2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7.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屬)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말한다. <개정 2020. 4. 28., 2020. 9. 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 위탁 업무의 수행에 따른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유지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4. 28.]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

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8.]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8.>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8.>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3. 법 제7조, 제9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백만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27241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㉙부터 <61>까지 생략

## 부 칙 <제2996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642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부 칙 <제30993호, 2020. 9. 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098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29.] [보건복지부령 제929호, 2022.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2., 2022. 12. 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8. 12., 2019. 12. 12.>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전문의 자격증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12. 29.>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12. 29.>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8. 12., 2020. 10. 8., 2022. 12. 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나.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에 따른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은 “등록 갱신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 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명칭 및 주소
    - 나. 대표자 성명
    - 다.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전문의 자격증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명칭이나 주소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 ④ 법 제6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어로 적은 문서를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3.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게시·비치할 수 있다.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5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 병상 수의 100분의 8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20. 10. 8., 2022. 12. 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외 의료기관 및 의료 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 일시, 시행 장소 및

시험과목 등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문화

나. 의료서비스

다. 병원시스템

라. 기초의학

마. 그 밖에 의료 통역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구술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나. 의료 지식

④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구술시험: 구술시험 총점의 75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⑤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7. 10. 13.>

⑥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7. 10. 13.>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시험비용 및 부정행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0. 13.>

**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2. 통역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②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각각 갖추는 것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 및 장비를 갖추는 것

3.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4.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능력이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양성기관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별지 제8호서식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별지 제9호서식

[제목개정 2022. 12. 29.]

**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9.>

1.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 의료자원의 수
3. 국내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특정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성형외과
2. 피부과

③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과목의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의료인의 성명, 면허번호, 진료과목 및 소속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환자를 담당하는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및 소속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현재 거주 국가 및 지역
4.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
5. 외국인환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실로 사용할 수 있다.

2. 데이터 및 화상(畫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 ⑤ 제1항·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15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 ① 법 제 1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기관의 명칭, 주소 및 규모
  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참가자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및 경력
  3.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계획 및 연수실시 결과
  4. 그 밖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2.]

**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 부 칙 <제407호, 2016.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529호, 2017.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5호,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하여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0호,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53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9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자본금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종합여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0.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1호, 2022. 10.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2, 298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7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신고 또는 고발 방법)** ① 제2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신고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017-274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4호, 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9-181호,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분에 대하여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0-140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58호,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51호, 2022.10.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포상기준	비고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별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별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3.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별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해당 사건으로 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별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십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원으로 한다.	
4. 기소유예	1십만원으로 한다.	

■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개정 2021.10.13.>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고한 위반행위 내용			
위반 행위자명			
위반 기관명			
신고한 위반행위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환자 유치할 때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한 자 <input type="checkbox"/>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상의 의료광고 특례조항 위반한 자		
검찰처분결과 (행정기관 작성)	기 소		사 건 번 호
	기소유예		행정처분 결과
계좌신고	개설은행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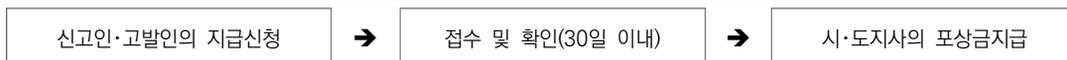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

#### 유의사항

※ 검찰처분 결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작성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를 고시

[시행 2017. 2.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6호, 2017. 2. 15., 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2, 298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법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입원환자 식대, 치과의 보철료,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15%
2. 종합병원·병원: 20%
3. 의원: 30%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017-26호, 2017. 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2, 298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국세청장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환급대상 의료용역)**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④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환급장소)**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양식에 따라 출국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국 정보 제공 동의 양식과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함에 투입하고 출국하는 것을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회 환급대상의료용역의 공급가액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제6조(환급·송금증명서)**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키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016-45호, 2016.3.21.>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0-140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행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발행일** 2023년 12월

**제 작** 행복프로세스사회적협동조합

# 2023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 043-713-8000~5 www.khidi.or.kr